

기본연구보고서 2014-20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upporting Policies for Village Community in
Local Government

최 길 수



연구진

연구책임

-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연구의 요약

■ 연구의 목적

- 마을이란 전통적으로 한지역에 모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 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은 지역 안에서 유사한 정주환경과 문화적인 가치 및 규범 등을 공유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공동체임
- 마을은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경쟁사회에서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나 긴장감을 완화시켜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주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입장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의 독특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이론 및 실태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을 모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의 방법

-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한 실태분석을 실시하고자 함
- 문헌고찰은 마을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 기존문헌에서 소개된 도시공동체운동에 관하여 논의하고, 대전시에서 2014년에 실시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서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함

■ 연구결과 및 정책 제안

○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 분석

- 대전시는 “①경제성장을 위한 관주도형 행정으로 사회적 신뢰·시민네트워크 기능 쇠퇴, ②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공생·상생의 가치를 우선하여 마을단위부터 정상성 회복운동을 전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사회통합 구현이 필요한 시점, ③마을의 공동체의식과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라는 배경 하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 3월~11월 간의 사업기간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협동조합(협동조합지원법상) 등에 참가자격이 있음
-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40백만원이고, 공모사업의 유형으로는 ①모이자(마을조사·주민학습), ②해보자(소규모 공동체 사업), ③가꾸자(중규모 공동체 사업) 등이며, 유형별로 200~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대전광역시에서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모한 결과 147개 단체가 선정되었으며, 이중 60개(40.8%) 모임은 2013년에도 선정되었던 모임이나 단체임

○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147개 단체(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역량에 관한 사항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우편, Fax,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조사 실시

- 단체의 역량에 관련 조사결과로서는,
 - 첫째, 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101개 중 68개(67.3%)가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 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에서도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 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같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활동단체가 조금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음
 - 둘째,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1개 단체 중 “교육활동단체” 와 “자원봉사단체” 가 각각 23개(22.8%) 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교육활동(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단체가 조금 더 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셋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7개(56.4%)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3년의 45.4%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마을 단위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넷째,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단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86개(85.1%)는 상근 활동가 없으며, 15개(14.9%)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음
 - 다섯째, “하루 4시간 주 2~3일 정도” 동안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임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59개(58.4%)는 비상근 활동가 없으며, 42개(41.6%)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에 비상근 활동가가 없다는 단체가 77.8%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8.4%로 많이 낮아져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음
 - 여섯째, 상근 및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17개(16.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이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조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비중이 조사대상의 90.7% 였으나, 2014년에는 83.2%로 낮아짐)

- 일곱째, “단체 재원의 1/2(50%) 정도” 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37개(36.6%)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36개(35.6%)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음(2013년에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이 57.2%였고, 17.5%가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함).
- 다음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 첫째, 사업비의 책정(82.1%가 보통이상), 사업에 대한 홍보(87.1%가 보통이상, 2013년에는 70.9%), 사업 설명회(76.2%가 긍정적 평가, 2013년에는 46.4%가 긍정적 평가),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77.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67.5%가 긍정적 평가), 구비서류의 적절성(66.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59.8%이 긍정적 평가), 심사기준의 적정성(68.5%가 “그렇다” 이상으로 평가, 2013년의 조사결과도 비슷), 사업기간의 적정성(65.4%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 조사에서 33.4%만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음
 - 둘째,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9.8%가 “사업재원의 부족” 을 지적하고 있음
 - 셋째,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에 대한 중요도는 89.1%, ② “주민대상의 교육” 에 대한 중요도는 86.2%, ③ “활동가의 양성” 에 대한 중요도는 87.2%, ④ “법·제도의 마련” 에 대한 중요도는 62.4%, ⑤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 에 대한 중요도는 73.3%, ⑥ “전문가의 지원” 에 대한 중요도는 76.2%, ⑦ “구성원의 역량 강화” 에 대한 중요도는 91.1% 등으로 나타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 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지방정부(대전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
 -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 하여야함

- 마을공동체는 활동기반이 되는 운영규정(규칙)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유형별 표준정관 또는 표준운영규정(규칙)을 만들어서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대전광역시가 제공하는 지원과 역할로서는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기존 “사회적자본 확충조례(2013년 시행)”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이와 더불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운영 예산의 규모를 상향조정 하는 등을 포함한 재원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하고,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임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사업 운영자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마을공동체에 관한 문헌고찰	9
제1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제개념	9
1. 마을 및 동네의 개념	9
2. 공동체와 자치, 참여와의 관계	11
제2절 도시화와 도시공동체운동	12
1. ‘도시’와 ‘공동체’의 관계와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	12
2.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성과 도시공동체운동	13
제3절 우리나라 도시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특성	14
1. ‘적응형’도시공동체운동(1960-1970년대)	14
2. ‘저항형’도시공동체운동(1980년대)	16
3. ‘방어형’도시공동체운동(1990년대)	17
4. ‘창조형’도시공동체운동(1990년대 후반)	17
제4절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의 모델	19
1.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	19
2. 협력형 모델의 등장과 도시 거버넌스의 경험	21
3.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22
제3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	27
제1절 사업의 추진개요	27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27

2. 사업의 공모 내용	28
3. 사업의 추진절차	29
4. 사업의 심사	30
5. 사업의 주요서식 및 공모 결과	30
제2절 사업예산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32
1. 예산 집행의 원칙	32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34
3.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37
제4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에 관한 설문조사	41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41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44
1. 단체역량에 관한 분석	44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50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58
제5장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	63
제1절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63
1. 운영규정(규칙)의 제정	63
2. 체계적인 조직 구성	64
3. 가용재원의 확충	65
제2절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66
1. 지원체계의 문제점	66
2.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67
3.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68
4.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육성 및 지원	68
5.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70

제3절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72
1. 교육기획 및 기법	72
2. 주민교육체계	75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77
1. 중간지원기관의 의의	77
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81
제6장 결론 : 정책제언	85
참고문헌	89
부록 : 설문지	93

표 목 차

<표 2-1> 도시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	13
<표 2-2> 슬럼가와 달동네의 특성 비교	15
<표 2-3>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의 흐름과 특성	24
<표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28
<표 3-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29
<표 3-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내용	30
<표 3-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별 선정 현황	31
<표 3-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유형별 선정 현황	31
<표 3-6>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임유형별 선정 현황	31
<표 4-1> 성별·연령·학력·거주지별·가구소득 기술통계	42
<표 4-2> 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형태별 기술통계	43
<표 4-3> 단체의 형태	44
<표 4-4> 단체의 활동 분야	45
<표 4-5> 정관 또는 회칙의 존재 유무	46
<표 4-6> 상근활동가의 유무 및 수	47
<표 4-7> 비상근 활동가의 유무 및 수	48
<표 4-8> 활동가에 대한 보수지급 유무	49
<표 4-9> 재원의 원천	50
<표 4-10> 사업비의 적정성	50
<표 4-11> 예산기준표 개선점	51
<표 4-12> 홍보의 충분성	52
<표 4-13>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52
<표 4-14>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53
<표 4-15> 구비서류의 적정성	54
<표 4-16> 심사기준의 적절성	54
<표 4-17> 사업기간의 적정성	55
<표 4-18> 사업수행의 애로점	56
<표 4-19>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57

<표 5-1>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71
<표 5-2> 교육 콘텐츠 분류에 따른 교육내용 사례	76

그림 목 차

[그림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틀 2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시민문제의 대부분은 근대화 이후 자본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경제적 성취에만 성공의 방점을 두는데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소외와 소통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나친 개인적 성취와 자기계발의 압력이 커지면 과잉경쟁에 의한 교육의 왜곡과 청소년문제를 소통으로 풀어낼 기회를 급감시킨다. 진학과 안정된 취업이라는 주어진 삶의 노선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사회적 낙오라는 낙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이 아이들은 동네에서 경쟁자가 아닌 친구를 사귀는 법도 모르게 커간다. 분절된 개인가족 단위의 삶은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고 소외를 가중시킨다. 다양한 욕구는 모두 경제적 자본의 추구로 귀결되고, 경제적 성취를 벗어난 다른 삶의 목표를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우주의 욕망이 들끓는 무의식을 가진 존재이고, 언젠든 자연과 대면할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은 지역 안에서 유사한 정주환경과 문화적인 가치 및 규범 등을 공유하며 생활을 이어가는 공동체이다. 그 안에는 삶의 모델이 되는 어른이 있고, 지친 삶의 치유를 주는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이 있어 주민을 결속시켜 왔다(전대욱, 2013: 22). 이와 같이 마을은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경쟁사회에서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나 긴장감을 완화시켜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측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을이 만들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좋은 마을이란 어떠한 곳일까? 이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이 안정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기분 좋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긴급 상황시에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생산, 유통, 업무, 관광, 학술 등 도시별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나가 충실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도시기능에 충실하여 외관상으로는 훌륭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좋은 마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할지라도 일부 사람만을 위한다거나, 소란스럽기만 해서 편안하게 살수 없는 마을이라면 좋은 마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장준호·김선직 옮김, 2880: 41).

1990년대 이후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이 지역발전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빈곤,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역할 및 참여가 중요해졌고 주민의 역동성을 이러한 사회적 과제해결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 국가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갈수록 주민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주민의 학습, 인적자원개발 등이 더 근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관건이 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인 핵심과제로 확산되었고, 일본의 마치즈쿠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을 반영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양한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육성이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분석이 요구되고 있으며, 대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마을공동체의 독특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문헌고찰과 실태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와 아울러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실태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간적으로 마을(동네)만들기,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등에 관해 최근에 발표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역사적 진행과정을 제외하고 대전시의 마을만들기 추진실태에 관해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둘째,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내용적 범위로서 마을만들기의 기존문헌의 검토, 설문을 통한 대전지역의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대전형 마을만들기”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등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마을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도시공동체운동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대전시에서 2014년에 실시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서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및 분석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2장 마을공동체에 관한 문헌고찰

제1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제개념

제2절 도시화와 도시공동체운동

제3절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의
흐름과 특성

제4절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의 모델

제2장 마을공동체에 관한 문헌고찰

제1절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제개념

1. 마을 및 동네의 개념

마을 만들기는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만든다는 것은 하드(hard)한 시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체적인 소프트(soft)를 포함하는 일이다(장준호·김선직 옮김, 2008: 41).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①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②이웃에 놀러다니는 일을 뜻한다. 마을이란 전통적으로 한지역에 모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옛 마을은 전통적인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부락민 모두가 공동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한 지역 주민전체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다. 따라서 마을의 기본적인 가치는 보전하되 물리적, 사회적 개념은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도시에서 마을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일 수 있으므로 물리적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하나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된다기 보다는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도시의 마을을 정의해 보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으로서 행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동” 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가지며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2: 37).

마을과 가장 가까운 유사개념으로써 “동네” 를 들 수 있다. 동네(Neighborhood)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 이다. 학술적으로는 ‘주거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 로 정의된다. 이러한 동네의 성격으로는 첫

째, 동네를 ‘지역사회(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둘째, 동네를 서비스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수준, 사회적·물리적 환경, 동네 안팎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동네의 조건과 상화들이 주민들의 복지와 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대상이 된다. 셋째, ‘소비대상’ 또는 ‘상품’으로서 동네를 바라 볼 수 있다. 도시는 상품화된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동네는 다양한 질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서비스공급업자는 소비자기호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위하여 주거형태의 특징들을 강조하며, 구매자는 주거환경의 프로필과 가격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지위에 맞는 동네를 선택하게 된다(곽현근, 2012: 2-4).

이와 같은 두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면, 마을은 촌락 또는 영어의 ‘village’ 개념에 내포되어 있는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동네의 개념과 비교할 때, 마을은 지역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다분히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네 단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동네에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다(곽현근, 2012: 3).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도시화·산업화로 삭막해진 현대사회에 대한 처방으로서 주거지(동네)를 중심으로 주민사이에 지역공동체 성격을 불어넣고 강화하려는 사회운동의 성격을 띤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함께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문제는 지역사회가 과거 농경시대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형성의 관점은 마을(지역)을 단순히 주어진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관계형성과 공동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을은 ‘존재(being)’가 아니라 마을이 ‘되어가는 것(becoming)’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과

적으로 마을성이란 마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타의 지리적 공간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장소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주민사이에 심리적·사회적 유대가 형성되며, 장소의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상징들에 대한 정체성이 뿌리내리게 됨을 의미한다(곽현근, 2013: 22).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의 물리적인 범위와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마을은 동네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행위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마을이란 ‘농촌이든 도시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community)의 단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의 지역적 범위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community)로서의 범위를 말한다.

2. 공동체와 자치, 참여와의 관계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이고, 자치는 자기 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에는 자치기구, 자치사무, 자주재원, 참여가 필요하다. 공동체와 자치 모두에 참여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와 자치 모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치는 자기입법과 자기통제를 주된 개념요소로 구성한다. 자치는 일정한 지역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권이 있어야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지역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경우에 이는 식민이라고 한다. 자치를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만들어 그 규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라고 할 수 있다. 자치가 잘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둘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주민참여는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자치에도 이바지하는 핵심요소가 된다(서울연구원, 2012: 28-29).

제2절 도시화와 도시공동체운동¹⁾

1. ‘도시’와 ‘공동체’의 관계와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

근대성의 표상인 ‘도시’와 전근대성을 상징하던 ‘공동체’ 사이에는 개념적으로 적지 않은 긴장이 있다. 근대적 도시를 탄생시킨 도시화 과정은(전통적) 공동체의 해체와 함께 일차적(자연적, 친족적) 관계를 이차적(공식적, 기능적) 관계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도시화에 따른 관계 변화에 대한 평가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큼 다양하다. 공동체를 억압적·퇴행적·폐쇄적인 것, 즉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도시화로 인한 전통적 관계의 해체와 익명성의 등장이 사람들의 자유로움과 활력을 주는 기반이 된다고 본다. 반면에 소속감·연대감·정착성·공공성 실현의 바탕으로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도시화에 따른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의 붕괴는 단절과 소외, 무질서와 갈등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고 보고 있다(정규호, 2012: 10, 재인용). 또한 도시와 공동체의 상관관계와 관련하여 도시화로 인한 높은 인구밀도가 사람들 간의 경쟁과 이기주의를 심화시킨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대면적 접촉의 빈도를 높여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주장도 있다(정규호, 2012: 10, 재인용). 도시공동체운동이 ‘새삼스레’ 주목받는 이유는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고 이웃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거주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표류하는 삶이 도시시민들에게 주는 피로감과 불안감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역과 이웃에 정을 붙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높아진 열망이 도시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기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던 당시만 해도 도시는 상향식 이동을 위한 기회의 공간이었고, 그만큼 개별적 선택의 폭도 넓어서 영세 서민들의 집단거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는 별로 없었다. 도시에서 직장이나 학교, 환경, 투자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지를 선택하고 이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 도시화와 도시공동체 운동은 정규호(2012, 9-12)의 논문을 요약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의 사회경제와 공간적 구조의 변화와 함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선택의 자율성이 점점 줄어들고 비용은 갈수록 높아지기 시작했다. 여기에다 압축적인 도시화 과정에서 경쟁과 속도에 지친 사람들과 함께 개인이나 가족 단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도 늘어나면서 대안으로서 도시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보다 밀착해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적 모델들을 도시 속에서 찾고 만들어보자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표 2-1〉 도시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기대들

구분	내용
심리적 측면	안정과 신뢰감 형성
사회적 측면	상호 부조의 연결망 형성
경제적 측면	생활재와 공공재의 공동생산
정치적 측면	참여를 통한 학습과 민주주의 역량 형성

자료 : 정규호(2012: 11)

2.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성과 도시공동체운동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거대한 구조 변동 속에서 이루어진 만큼, 도시민들이 당면해야 했던 충격과 부담 또한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근대 초입단계였던 1910년에서 1950년대까지는 정치사회적 격변기와 맞물려 대규모 인구가 도시로 이동했다. 일제강점기에는 토지조사사업과 일본인 및 친일지주의 토지 강탈 등으로 농촌을 이탈한 농민들(빈농, 소작농)이 도시 주변으로 이주해 움막 또는 토막으로 불리는 거주지를 마련했으며, 광복 후에는 귀환한 해외 동포들과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했다. 이후 발생한 한국전쟁으로 삶의 터를 떠난 피난민들은 대규모로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이동하여 도심에 판자촌을 형성하기도 했다(정규호, 2012: 11, 재인용).

한편 1960년에서 1970년대 사이에는 본격적인 근대화·산업화가 만들어낸 경제

구조의 급속한 변화과정에서 대규모의 이농(離農)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촌향도(離村向都)한 사람들이 도시 변두리의 판자촌(달동네)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시간 압축적으로 거대하게 전개된 사회경제적 구조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귀환인, 월남민, 이농민들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전개된 우리의 도시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전통사회와의 급격한 단절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단계적 성장 과정을 거쳐 온 영미권 선진 자본주의국가들의 도시화 과정과는 그 규모나 속도 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경험한 경제사회, 공간환경,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만큼 그 속에서 살아온 도시민들의 삶의 양태도 역동적일 수밖에 없다.

여하튼 우리의 도시화 과정이 만들어낸 전통적 관계의 급속한 해체와 거대한 인구이동을 동반한 구조적 변화들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체성’과 ‘정착성’을 핵심적인 과제로 부각시켰고, 이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합적 대응을 통해 해결해야 할 필요성 또한 클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시화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과편화의 흐름 속에서 도시민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와 필요들을 상호 협력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을 도시공동체운동으로 볼 때, 우리나라 도시화 과정이 만들어낸 충격과 변화만큼 도시 속 공동체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도 클 수밖에 없었다. 다만 도시민들의 공동체적 대응양식은 도시화가 만들어낸 환경 변화와 그 속에 살아가는 도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제3절 우리나라 도시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특성²⁾

1. ‘적응형’ 도시공동체운동(1960-1970년대)

근대적 의미에서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의 원형은 이른바 ‘달동네’로 불리는 도시 빈민들의 집단거주지(불량촌)에서 발견할 수 있다. 농촌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도

2) “우리나라 도시공동체 운동의 흐름과 특성”은 정규호(2012, 13-17)의 논문을 요약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심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는 이름처럼 산등성이나 산비탈에 위치한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다.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취약한 사람들이 지가가 저렴한 고지대를 찾아 삶의 거주지를 마련하면서 형성된 곳이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자구적(自救的) 공동체가 등장하였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비슷한 처지의 이웃들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전통적 관계의 단절이 가져다주는 ‘고독감’과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에 따른 ‘부담감’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데다 저학력에 기술력 부족으로 도시 내에서도 비공식 부문에서 임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상부상조는 생손을 위해서도 필요했다. 따라서 당시의 공동체는 가치나 규범보다는 비공식적 연결망을 통해 생활의 필요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정규호, 2012: 13, 재인용).

달동네는 삶의 고달픔과 함께 희망이 공존하는 곳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삶의 정착지가 아니라 보다 안정된 도시적 삶을 향해 거쳐 가는 정거장으로 생각했다. 높은 교육열에서 보듯이 이곳 사람들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 점에서 달동네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불량촌은 사회적 일탈행위나 범죄자가 많은 서구 도시의 슬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정규호, 2012: 13, 재인용).

〈표 2-2〉 슬럼가와 달동네의 특성 비교

구분	서구 도시의 슬럼가	우리나라 도시의 달동네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에 있는 우량 주거지의 노후화, 불량화 결과로 형성 · 사회적 배제자와 부적응자, 일탈자의 집단 거주지로 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급증과 도시기반시설 미비로 처음부터 무허가 불량 정착촌 형성 · 높은 성취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상호부조와 공동체적 유대감 형성

자료 : 정규호(2012: 14)

한편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구적 공동체를 형성한 곳들을 중심으로 이들의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운동적’ 노력이 나타났다. 많은 사회운동

가·종교인·예술가들이 달동네를 도시공동체운동의 근거지로 삼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복지·문화·예술 등의 활동을 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서울 산동네와 하천변 판자촌에서 주민들을 조직하여 도시빈민운동이 시작되었고, 생산공동체운동, 신탁운동 등 다양한 공동체적 실험들이 시도되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도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적응형’ 도시공동체운동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도시 속 공동체들은 이후 전개되는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저항형’ 도시공동체운동(1980년대)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대규모로 사람들을 도시로 불러 모았지만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나 기반은 만들어 놓지 못했다. 오히려 도시공간 규모의 확장과 공간개발 과정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도심에서 다시 바깥으로 떠밀어냈다. 한국전쟁 후 청계천변 등 서울 도심의 판자촌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이른바 무허가 불량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주위 고지대로 이동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봉천동·신림동 등 도심 외곽으로 이동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대도시 근교 비닐하우스촌이나 성남·부천·원미동 등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서울의 경우 도시 빈민 주거지역의 철거 작업은 시작한 지 40년 만인 2004년에 상도동 달동네 철거까지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도시 서민들의 땀과 눈물과 정이 녹아 있던 도시공동체의 초기 원형들은 사라져갔다.

하지만 도시 민주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그냥 순응하지는 않았다. 1980년대 이후 도시 빈민들의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강제 철거에 대항하여 저항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기존에 공동체적 이웃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나타났다(정규호, 2012: 15, 재인용). 거주 생활공간의 강제적 해체과정에서 주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저항형’ 도시공동체운동이라 부를 수 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사회민주화 운동의 흐름과 연결되기도 했다.

3. ‘방어형’ 도시공동체운동(1990년대)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에 이르면서 도시를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에도 상당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1987년 민주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폭발적 성장과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된 대중소비 사회의 도래,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의 등장은 도시민들로 하여금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대한 욕구, 자치에 대한 권리 의식들을 높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민들 스스로 자신들의 생활세계를 지키고 가꾸기 위한 생활 밀착형 운동들이 등장하였다. 이른바 ‘방어형’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비슷한 생활권에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생활인으로서 권리(생활권)를 스스로 지키고 협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도시의 빈민들이 주체가 되어 주거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기존의 운동과는 달리 도시의 중산층까지 참여하여 쓰레기나 소음, 교육, 환경 등 삶의 질과 밀접한 생활 속 문제들을 가지고 활동들이 펼쳐졌다. 1990년대 들어 등장한 아파트 공동체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주거공간으로서 도시 아파트가 가진 한계를 넘어서 이웃관계의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들이 나타났다(정규호, 2012: 16, 재인용). 지방자치시대의 부활과 함께 공공 및 상업 시설들의 입지가 주는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자신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조직화된 운동들도 1990년대 들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천의 담배자판기 철거운동(1992), 서울 상계동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운동(1993), 일산 지역의 러브호텔 반대운동(1999)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창조형’ 도시공동체운동(1990년대 후반)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세계화에 따른 개방경제 체제의 충격이 도시민들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1997년 IMF 관리체계를 맞은 경제위기 상황은 도시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삶 자체를 바꿔 놓았다. 결국 부실한 사회경제적 안전망 속에서 도시 중산층의 붕괴는 고용과 복지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시공동체의 역할을 새롭게 찾게 되었고, 국가의 관료체계나 시장의 자유경제체계와는

다른 가치로 작동하는 대안적 모델을 만들기 위한 ‘창조형’ 도시공동체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생활협동조합운동, 지역화폐, 자활공동체운동 등 민간영역에서 시도되어왔던 다양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주목받게 된 것도 이때부터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지역의 구체적인 생활 단위를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바꾸고자 하는 창조적 노력들이 이른바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담장허물기 운동, 마을도서관 만들기, 친환경 주차차장 만들기 등이 ‘지역’, ‘마을’, ‘동네’와 같은 생활 현장과 밀착되어 다양하게 펼쳐졌다. 이것은 계획이나 정책 또는 운동의 대안적인 실천영역으로 미시적인 단위들이 주목받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후 민간차원에서 ‘운동’으로 진행되어오던 마을만들기운동은 2000년대 들어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구체화된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주민들의 정주의식과 공동체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부터 본격화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후 ‘살기 좋은’이란 수식어를 달고 전국 단위에서 도시만들기, 지역만들기를 위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기존의 관 주도형 하향식 지역개발, 하드웨어 중심의 물리적 공간개발 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인식들도 중요하게 작용했으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사람과 장소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다.

이처럼 보다 적극적으로 도시의 생활공간 속에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를 새롭게 실현하려는 ‘창조형’ 도시공동체운동은 해당 지역에서 계획을 가지고 부문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 사람과 자원을 조직하여 공동체적 가치와 질서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어진 생활공간 단위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지키거나 실현하고자 했던 공동체운동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자 했던 노력들이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도 있었다. 종합적인 전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밀착해서 자원을 조직하고 경제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전략들이 필요했다.

한편 국가 중심적 지역개발에서 공동체 중심의 지역발전으로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마을(도시)만들기 사업은 행정의 제도적 관성 극복과 민

가의 역량 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정규호, 2012: 17, 재인용). ‘주민참여적 마을(도시)만들기’라는 목표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행정과 전문가, 그리고 조직화된 집단들의 역할 비중이 큰 상태에서 해당 지역주민들 각각의 실질적인 참여는 제한적이었고, 그나마도 의사 결정 이후 실행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제4절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의 모델³⁾

1.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

노무현 정부 들어서 다각적으로 추진되었던 ‘만들기’ 사업들은 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심적인 내용과 ‘성과’ 중심적인 추진 방식으로 인해 한계를 보였다. 결국 현장과 일상 속에서 도시공동체운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인의 눈높이로 ‘사람’과 ‘관계’, ‘과정’을 종합적이면서도 섬세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당사자이자 주체가 되어 생활의 구체적인 필요를 조직하고 관계를 맺어나가기 위해서는 운동과 제도의 양식과 상호 관계에 대한 변화를 통해 도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전망은 각 부문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선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은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의 지속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것은 결국 지역주민으로서 ‘삶의 정착성’이 높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거 이동성이 특히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민들의 정착성을 높이는 것은 도시공동체의 활성화에 핵심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정주체계의 불안정성은 곧바로 사회공간적인 상실감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공간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장소’와 지향하는 ‘가치’가 서로 밀착되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의 모델”은 정규호(2012, 17-23)의 논문을 요약 재구성하였음을 밝힙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에서 거주민들을 몰아내는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과 개발 방식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사유재산권(소유권)에 기반해서 사업성 위주로 진행해오던 도시개발 방식에 대해 패러다임 차원이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적 관성으로부터 혁신을 통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노력이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도시 현실에서 제도적 혁신의 폭과 깊이는 인사권, 재정권, 각종인·허가권과 도시계획 관련 권한 등 강력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과 시민사회 민간영역 간의 협력적 관계가 활발한 곳에서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공간개발 방식의 변화 못지않게 주민생활의 정착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경제적 전략도 중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도시개발이나 도시공동체운동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던 영역으로, 근래에 들어 사회경제적 불안정성과 양극화 문제가 도시시민들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즉, 도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경제적 과제들을 협동을 통해 해결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도시공동체의 역할로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참여의 조직화와 공동체 형성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동체의 실질적 당사자이자 주체인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세밀한 준비와 기획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 생활권의 세부 단위별로 다양한 풀뿌리 네트워크들을 조직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참여과정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개별 참여로 인한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상호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고 민관 파트너십을 매개하고 촉진하는 데 그 효과성이 높다(정규호, 2012: 19, 재인용).

2. 협력형 모델의 등장과 도시 거버넌스의 경험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협력형 모델의 등장이 가지는 의미를 운동과 제도의 상호 관계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창기 ‘적응형’ 도시공동체운동의 등장은 제도의 영향력이 운동의 역량을 압도하던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후 민간 차원의 운동적 역량이 축적되면서 제도적 억압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저항형’ 도시공동체운동이 나타났으며, 민주화와 지방화를 통해 제도적 양식이 변화하고 민간 자율적 영역이 확장되면서 ‘방어형’ 도시공동체운동이 등장하였고, 이어서 운동영역에서 진행해오던 노력들이 제도영역의 실천적 과제로 채택되면서 ‘창조형’ 도시공동체운동이 등장했다.

그렇다면 새로운 도시공동체운동으로서 ‘협력형’ 모델의 등장은 기존의 제도와 운동영역에 대한 혁신을 통해 상호 관계와 역할을 새롭게 함으로써 도시의 사회·경제·공간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재조직해야 할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도시’와 ‘공동체’만큼 변화와 역동성을 상징하는 ‘운동’과 안정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제도’ 사이에도 의미와 역할에 긴장이 존재한다. 도시공동체운동에서 협력형 모델이 자리를 잡아가는 데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부문과 영역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형 모델이 ‘운동영역의 새로운 확장인’ 아니면 ‘제도로 결국 포섭되고 말 것인지’, 또 아니면 ‘기존 운동과 제도의 틀을 넘은 혁신으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것인지’는 계속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물음들이다.

이 점에서 도시관리 영역에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성하고 운영해온 기존의 경험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데, 요약해보자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도시 현실에서 거버넌스는 상당히 도구화·형식화된 상태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거버넌스의 핵심 구성요소를 ‘행위자(actor)’, ‘관계(relationship)’, ‘과정(process)’으로 구분해볼 때, 그동안의 도시 거버넌스는 구성 형식에서 참여 주체들의 균등성은 강조한 반면, 권한과 책임 면에서 관계의 공평성과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그러다 보니 거버넌스가 도시의 공적 역할을 축소하고 시민사회의 활력을 제약시키는 ‘뒤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정규호, 2006). 그런데 도시공동체운동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동안 도시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버넌스에는 행정과 준비된 전문가, 조직화된 시민단체들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들, 특히 미시적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이다(정규호, 2012: 21, 재인용).

3.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우리나라처럼 저항과 동원의 역사적 경험이 강한 사회에서 협력형 도시공동체운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하향식)와 민간 주도(상향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도시거버넌스 경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제안된 거버넌스의 미니멀화와 멀티화도 이것을 중간에서 매개하고 촉진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중간지원조직이란 말 그대로 ‘사이’에서 ‘경계’를 넘어 지속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광역 단위에서 기초 생활권까지의 수직적 연계와, 경제-사회-공간 영역을 아우르는 수평적 연계를 종합적으로 매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중간지원조직에 기대하는 역할들은 ‘권능강화(empowerment)’, ‘인큐베이팅(incubating)’, ‘코디네이팅(coordinating)’, ‘허브(hub)’ 등 다양하며, 이런 역할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잘 지켜질 필요가 있다.

첫째, ‘자율성’의 원칙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는 공공기관이 직접 만들어 운영하거나(직영), 민간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거나(민영), 또는 공공기관이 만들고 민간이 운영하는 방식(위탁)이 있다. 이 중 민간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고 운영할 능력이 있으면 자율성 측면에서 민영 방식이 이상적이나, 공공영역이 가진 자원을 적극 활용하되 실제 운영과정에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이 우리 현실에서는 바람직하다(정규호, 2012: 22, 재인용). 또한 공공영역의 자원 활용에서 예산의 결정과 편성 및 운영구조를 어떻게 마련하고, 또 성과에 대한 평가 방식과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가 자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둘째, ‘지속성’의 원칙이다. 협력형 모델의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도 공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초기의 자원 ‘교환’ 단계를 넘어 자원을 ‘공유’ 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자원을 공동으로 ‘생산’ 하는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관련하여 특히 행정의 협력이 중요한데, 지원 역할은 행정 특정 부서의 업무로 제한되기보다 지자체 행정 전반의 통합적 지원과 참여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사회, 경제, 공간 등 도시 전반을 아울러서 도시공동체를 만드는 것과도 연결된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개별 참여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3〉 우리나라 도시공동체운동의 흐름과 특성

구분	시기	주체	내용	운동과 제도의 관계
적응형	1960-1970년대	도시 저소득층 (도시빈민)	· 도시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 · 이웃 간 상부상조를 통한 자활과 자립 모색 : 도시빈민운동, 생산공동체, 신탁운동 등	제도의 영향력이 운동의 역량을 압도
저항형	1980년대	도시 저소득층 (도시빈민)	· 재개발과 강제철거에 대한 주거 생존권 운동 · 주민교육 및 조직화를 통한 저항 운동 : 도시빈민운동, 사회민주화운동과 연계	축적된 운동적 역량이 제도적 억압에 충돌
방어형	1990년대	도시 중산층 포함(지역주민)	· 생활세계를 지키고 가꾸는 생활 밀착형 운동 · 생활 문제를 삶의 질, 참여, 자치에 대한 관심과 연결 - 아파트공동체 운동, 주민자치 운동 등	제도적 환경 변화(민주화, 지방화)와 민간 자율적 영역 확대
창조형	1990년대 후반	행정(중앙, 지방), 민간단체, 전문가	· 경제위기와 삶의 대안(고용, 복지 등) 모색 : 지역공동체, 생활협동조합운동 · 지역공동체 만들기운동의 제도화와 사업화 : 도시(마을)만들기 운동	경제적 대안운동의 필요성, 마을만들기 운동의 제도화
협력형	2000년대 후반	행정(지방) + 민간단체 + 전문가 + 지역주민	· 도시공동체운동의 새로운 모색 : 주민주체성, 현장성, 일상성 · 공간-사회-경제 영역의 종합적 접근과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운동과 제도의 혁신과 새로운 관계 모색

자료 : 정규호(2012: 23)

제3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

제1절 사업의 추진개요

제2절 사업예산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제3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

제1절 사업의 추진개요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대전시는 “①경제성장을 위한 관주도형 행정으로 사회적 신뢰·시민네트워크 기능 쇠퇴, ②국가적 위상에 걸맞게 공생·상생의 가치를 우선하여 마을단위부터 정상성 회복운동을 전개, 서로 믿고 배려하는 사회통합 구현이 필요한 시점, ③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자치역량을 키우기 위해 단계별로 맞춤 지원”이라는 배경하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그림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틀



2. 사업의 공모 내용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4년 3월~11월 간의 사업기간으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 민간단체(대전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 협동조합(협동조합지원법상) 등에 참가자격을 부여하였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440백만원이고, 공모사업의 유형으로는 ① 모이자(마을조사·주민학습), ② 해보자(소규모 공동체 사업), ③ 가꾸자(중규모 공동체 사업) 등이며, 유형별로 200~8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3-1>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의 유형

구 분	모이자(A형) (마을조사·주민학습)	해보자(B형) (소규모 공동체사업)	가꾸자(C형) (중규모 공동체사업)
사업비	200 만원이내	500 만원이내	800 만원이내
사 업 선정수	60개 내외	40개 내외	5개 내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조사 ○ 사회적 문제 해결 및 마을 발전을 위한 의제 발굴 등 활동 (마을조사, 학습, 견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 마을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모임의 발굴 보육 및 주민공동체 활동가 발굴 육성 사업 ○ 마을공동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문제를 주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 마을주민공동체 사업 및 마을공동체들 간의 공동 협력 사업
선정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문제를 창조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업 ○ 주민모임의 일꾼을 발굴·훈련·조직하거나 주민모임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사업 ○ 2013년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우수 사업 추진 주민모임 ○ 지역사회 문제해결 (시민화합, 갈등해소, 사회폭력, 세대공존 등) ○ 자부담 및 공동기금 조성시 우대 		
사 업 비 편성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비는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3. 사업의 추진절차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연간사업계획의 공고를 시작으로 사업평가를 끝으로 당해 연도 사업이 종료된다.

〈표 3-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사업절차		내 용
연간사업계획 공고		-연초 발표(지원센터 홈페이지) -자격, 제출서류, 심사, 선정절차 등
↓		
사업설명회		-지원사업 내용 설명
↓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접수서류 구비해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방문 접수 -접수확인 안내 문자 발송 (3일 이내)
↓		
현장심사		-사업 기재내용 및 주민(단체)의 준비정도 등 현장방문 조사
↓		
심사·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결과 공고(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결과 통보
↓		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
사업추진 교육		-마을만들기 참여자 교육 -마을공동체 전반적인 사항 -회계 및 정산교육
↓		
협약체결 사업비 교부		-협약체결 : 마을만들기 참여자교육 후 -서류완비 후 사업비 지원(일주일 이내)
↓		
사업 집행	전문컨설팅	-전문가 지원 및 법적, 예산 절차 컨설팅 -멘토협의회 연계 마을현장 지원
	마을컨설팅	
↓		-3월~11월 구별, 분야별 전문 멘토단 운영으로 현장 컨설팅 지원
사업 정리 사업 정산		-결산서 제출
↓		
사업평가		-민관 파트너십 평가 -종합 평가

4. 사업의 심사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은 서류평가(60%)와 현장조사(40%)의 방법으로 사업의 타당성(사업의 필요성·공익성·실현가능성),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자발성 및 창의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및 지역자원연계, 사업의 파급효과 등)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표 3-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심사내용

구분	주요 심사내용
사업공익성(20)	○ 공공의 과제해결 및 마을공동체 형성 적합성
	○ 마을의 주민 편익 또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사업 추진 효과의 파급력
사업실현가능성(20)	○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주민참여정도
	○ 사업 추진방식의 창의성
	○ 책정 예산의 적정성과 자부담 정도
사업 지속가능성(20)	○ 주민공동체, 단체 구성의 자발성
	○ 지역의 자원의 동원, 연계 능력
	○ 모임 리더의 활동력 및 지역 공동체와의 네트워크 정도
현장조사(40)	○ 사업 지속성과 재정 자립 가능성
	○ 사업 참여의지 확인 및 적합도 현지 실사

5. 사업의 주요서식 및 공모 결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식을 요구하고 있다. 주요서식을 열거해 보면, ①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제안서(주민모임용, 법인·단체용), ② 참여주민 서명부, ③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④ 주민모임 소개서, ⑤ 단체(법인) 소개서, ⑥ 사업계획서, ⑦ 사업협약서, ⑧ 청렴이행 서약서, ⑨ 보조금 청구서, ⑩ 보조금 정산보고서, ⑪ 정산보고서, ⑫추진실적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전광역시에서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

여 공모한 결과는 <표 3-4>와 같으며, 선정된 147개 중 60개(40.8%) 모임은 2013년에도 선정되었던 모임이나 단체이다. 이러한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과 비교해보면, 사업비 규모에 있어서 2013년에는 640,588천원 이었으며, 지원된 단체나 모임의 개수는 226개(동구-39개, 중구-59개, 서구-59개, 유성구-34개, 대덕구-35개) 였다.

<표 3-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구별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개)

구분	계		모이자		가꾸자		해보자	
	건수	보조금	건수	보조금	건수	보조금	건수	보조금
계	147	431,429	103	204,154	40	195,275	4	32,000
동구	29	86,292	20	39,785	8	38,507	1	8,000
중구	21	65,190	15	29,670	4	19,520	2	16,000
서구	33	88,884	25	49,029	8	39,855	0	-
유성	35	108,800	23	45,800	11	55,000	1	8,000
대덕	29	82,263	20	39,870	9	42,393	0	-

<표 3-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계	의제	산업	교육	문화역사	환경생태	복지	갈등생활	미디어
147	11	3	44	25	33	11	12	8

<표 3-6>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임유형별 선정 현황

(단위 : 개)

계	주민모임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비고
147	134	1	12	

제2절 사업예산 편성원칙 및 회계처리 기준

1. 예산 집행의 원칙

-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사업비목 및 일정 준수)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사업과목 변경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위 과목간 금액변경은 내부의사결정에 따르되 그 내용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작성서식(예시) : 서식 23
- 보조금통장 사용
 - 보조금 통장은 하나은행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자부담이나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반드시 별도로 사용해야 한다.
-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는 동일사업에 2개 이상을 발부받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사업의 총괄관리자(대표자)는 각 체크카드의 정산관리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 보조사업비 집행방법
 - 보조사업비 집행은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한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전,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현금인출할(한)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신청

- 모든 사업자에게는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물품구입비, 식대 등을 계좌이체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해야 한다. 다만, 1차산업과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기세금계산서로 집행할 수 있다(사업자등록증 첨부).
 - 강사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액이 25만원이상일 경우 원천징수 후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한 금액은 세무관서에 납부한다.(대상은 건별기준이 아니라 월별 기준으로 판단)
 - ※ 원천징수 방법 : 서식 14
 -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생년월일·주소기재)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비 집행은 모이자사업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해보자가꾸자 사업은 품의서, 지출결의서에 의해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 : 서식 15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자는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 예산편성기준표 : 서식 13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사업일정에 따라 회계마감일(2014. 11. 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 회계마감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반납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 집행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환수한다.
- 기타 준수 사항
-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대전광역시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비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모든 지원사업의 식대사용은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2. 비목별 예산편성 기준

- 자부담 비용 부담
- 자부담율은 자율적으로 편성하되 심사에 반영 한다.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 조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 불가 항목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수수료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강사료, 회의참석비 등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용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 사업비목별 편성 방법
- 강 사 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해 지급 (내부 임직원·회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편성,
- ⇒ 정산 시 제출서류 : 프로필, 강사료청구서, 강사료지급 내역서,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 경비만을 편성하고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편성 억제
 - 회의참석수당은 내부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 불가
 - ⇒ 정산 시 제출서류 : 회의록, 회의참석수당청구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인건비
 - 고정인건비는 마을조사, 계획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외부인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내부직원이나 단체 임직원은 불가)
 - 단순인건비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용인부를 활용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
 - 1일 지급단가(1일 45,000원)를 초과할 수 없음
 - ※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된 것임
 - ⇒ 정산 시 제출서류 : 인건비사용계획, 인건비 지급 내역서, 계좌입금증

- 인 쇄 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 사용
 -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제작 시 예산의 절감을 기하도록 다음 사항을 권장
 - 1) 제작부수 : 필요부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과다 및 추가 인쇄되는 사례방지
 - 2) 표준규격 : A4, B5
 - 3) 표지 : 고급 표지 및 비닐코팅 등을 지양

4) 지질 : 가급적 재생지 또는 중질지 사용

5) 인쇄 : 양면인쇄, 단색인쇄 원칙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비는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 첨부

⇒ 정산시 제출서류 : 원가계산내역, 책자배포 내역

○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10%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경비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편성 불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0만원이상 예산집행시 2개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비교 및 조달청, 한국물가 협회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한다.

3.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단위 : 원)

항목	세 목	기 준	지출 한도액		비 고	
인건비	고 정 인 건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10회 이상 출근부 작성 월 10회 이상 활동일지 작성 	1일 최대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조사·계획 수립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의 외부인이 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 	
			1개월 최대	300,000		
	강 사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교 교수 이상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정부민간기관의 장 	1시간 이내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전액 환수조치 * 타 지역 강사의 경우 실비, 교통비 지급가능 	
			1시간 초과	100,000		
			1일 최대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강사 		1시간 이내	70,000			
			1시간 초과	40,000		
	단 순 인 건 비	1인 / 1일(9시간 기준)	시간당	5,500	최대 45,000 지급	
홍보비	홍 보 물 제 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활동비	식대, 교통비 등 기타 소액 경비	산출된 활동비 한도액을 총 사업 기간으로 나누어 해당금액을 월별로 집행	지원액의 10%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에 일괄지출 불가 월별 분산집행 	
사 업 진행비	행사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행사장소 대관 운영기준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가 건물임차 및 단체 운영임대료,관리비 불가 	
	식 비	1인 / 1식당 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워크숍 등 행사에 따른 식비로만 사용가능 	
	다 과 비	1인당 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회의 등 회의를 개최한 경우 	
	재 료 비	시장시세 적용 (예. 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 구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50만 원 이상 지출시 타견적 내용 첨부
	숙 박 비	1인 / 1실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체숙박의 경우 실질 금액 사전 협의 조정

제4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제4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에 관한 설문조사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한 공모 결과 대전광역시 5개 구에서 전체적으로 147개(동구 29건, 중구 21건, 서구 33건, 유성구 35건, 대덕구 29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147개 단체(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역량에 관한 사항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가지고 우편, Fax,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체 147개 단체의 대표들에게 배포된 설문지 중 101개가 회수되었으며,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적 통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2013년 조사에서도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바, 각 항목별로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설문의 응답자들을 먼저 성별, 연령, 학력별, 거주지별, 월평균가구소득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1>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성별로는 전체 101명중 남성은 43명(42.6%), 여성은 58명(57.4%)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연령별로는 20대가 10명(9.9%), 30대가 16명(15.8%), 40대가 31명(30.7%), 50대가 25명(24.8%), 60대 13명(12.9%), 70대 이상이 6명(5.9%)으로 나타나서, 40대의 대표가 가장 많이 참여했는데, 2013년 조사에서는 50대의 대표가 가장 많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학력은 중졸이하 8명(7.9%), 고졸이 21명(20.8%),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교졸이 43명(42.6%), 대학원졸이 24명(23.8%)으로 이번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표들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면에서 2013년 조사에서는 대표들의 학력이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인 것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거주지로는 동구지역이 23명(22.8%), 중구지역이 12명(11.9%), 서구지역이 21명(20.8%), 유성구지역이 23명(22.8%),

대덕구지역이 22명(21.8)으로 나타나서, 2013년의 서구지역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다음으로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만원 이하가 24명(23.8%), 201~300만원이 27명(26.7%), 301~400만원이 14명(13.9%), 401~500만원이 7명(6.9%), 501~600만원이 14명(13.9), 그리고 600만원 이상이 3명(3.0%)으로 나타나서, 대표들의 소득분포는 201~300만원 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성별 · 연령 · 학력 · 거주지별 · 가구소득 기술통계

구분		2014년	2013년
		빈도(%)	빈도(%)
성별	남성	43(42.6)	79(40.7)
	여성	58(57.4)	115(59.3)
	합계	101(100.0)	194(100.0)
연령	20대	10(9.9)	6(3.1)
	30대	16(15.8)	24(12.4)
	40대	31(30.7)	50(25.8)
	50대	25(24.8)	72(37.1)
	60대	13(12.9)	30(15.4)
	70대	6(5.9)	12(6.2)
	합계	101(100.0)	194(100.0)
학력	중졸이하	8(7.9)	14(7.2)
	고졸	21(20.8)	57(29.4)
	대학교졸(전문대포함)	43(42.6)	88(45.4)
	대학원졸	24(23.8)	30(15.5)
	기타	5(5.0)	5(2.6)
	합계	101(100.0)	194(100.0)
거주지	동구	23(22.8)	42(21.6)
	중구	12(11.9)	42(21.6)
	서구	21(20.8)	58(29.9)
	유성구	23(22.8)	26(13.4)
	대덕구	22(21.8)	26(13.4)
	합계	101(100.0)	194(100.0)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이하	24(23.8)	44(22.7)
	201~300만원	27(26.7)	52(26.8)
	301~400만원	14(13.9)	49(25.3)
	401~500만원	7(6.9)	25(12.9)
	501~600만원	14(13.9)	14(7.2)
	601만원이상	3(3.0)	8(4.1)
	모름	12(11.9)	2(1.0)
합계	101(100.0)	194(100.0)	

다음으로 주거형태, 대전시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술적 통계결과를 보면 <표 4-2>와 같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주거형태는 주상복합이 3명(3.0%), 단독주택이 20명(19.8%), 아파트가 58명(57.4%),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이 19명(18.8%) 등으로 나타나서, 2014년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대부분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대전시 거주기간별로 보면 3년이하가 3명(3.0%), 4~6년이 5명(5.0%), 7~10년이 8명(7.9%), 11~13년이 8명(7.9%), 14~16년이 9명(8.9%), 17~20년이 1명(1.0%), 20년 이상이 67명(66.3%) 등으로 나타나서,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대전시 거주 기간은 대부분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주택소유형태는 자택이 76명(75.2%), 전세가 13명(12.9%), 월세가 12명(11.9%)으로 나타나서, 설문에 참여한 대표들의 주택소유 형태는 대부분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형태별 기술통계

구분		빈도(%)	
		2014년	2013년
주거형태	주상복합	3(3.0)	11(5.7)
	단독주택	20(19.8)	36(18.6)
	아파트	58(57.4)	122(62.9)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19(18.8)	22(11.3)
	기타	1(1.0)	3(1.5)
	합계	101(100.0)	194(100.0)
대전시 거주기간	3년이하	3(3.0)	0(0)
	4~6년	5(5.0)	11(5.7)
	7~10년	8(7.9)	12(6.2)
	11~13년	8(7.9)	13(6.7)
	14~16년	9(8.9)	12(6.2)
	17~20년	1(1.0)	16(8.2)
	20년이상	67(66.3)	130(67.0)
합계	101(100.0)	194(100.0)	
주택 소유형태	자택	76(75.2)	155(79.9)
	전세	13(12.9)	19(9.8)
	월세	12(11.9)	20(10.3)
	합계	101(100.0)	194(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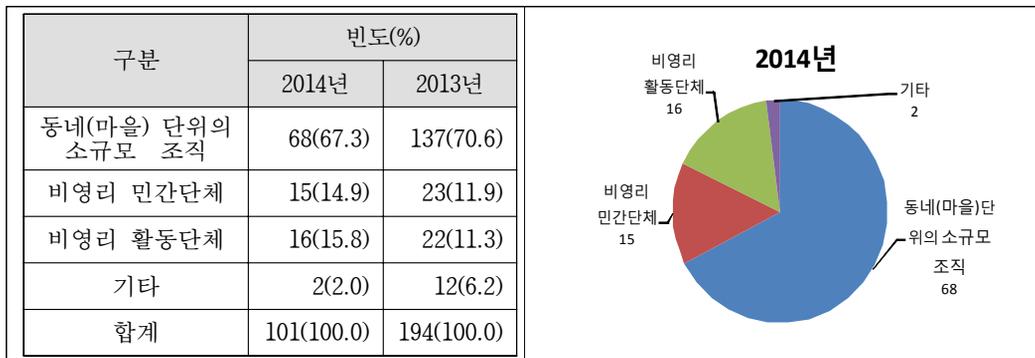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단체역량에 관한 분석

1) 단체의 형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형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1개 중 68개(67.3%)가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활동단체가 각각 15개(14.9%)와 16(15.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조사에서도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같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활동단체가 조금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그 밖에 대학동아리, 비영리법인 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단체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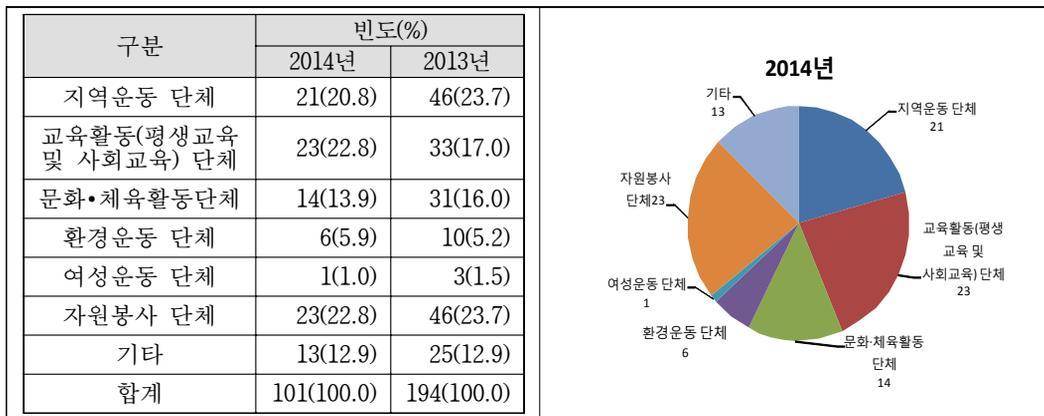
2) 단체의 활동분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1개 단체 중 “교육활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각각 23개(22.8%)씩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지역운동단체 단체”로 21개(20.8%)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교육활동(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단체가 조금 더 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경노당노인들 건강관리, 경로당 회원, 과학기술관련 단체, 꽃길가꾸기(동네주변), 로컬푸드 운동단체, 이웃간 교류 및 계도, 장애인단체, 종교, 좋은 먹거리, 주말농장, 책발간, 청년단체, 평화운동 등 아주 다양하게 조사되었다.

〈표 4-4〉 단체의 활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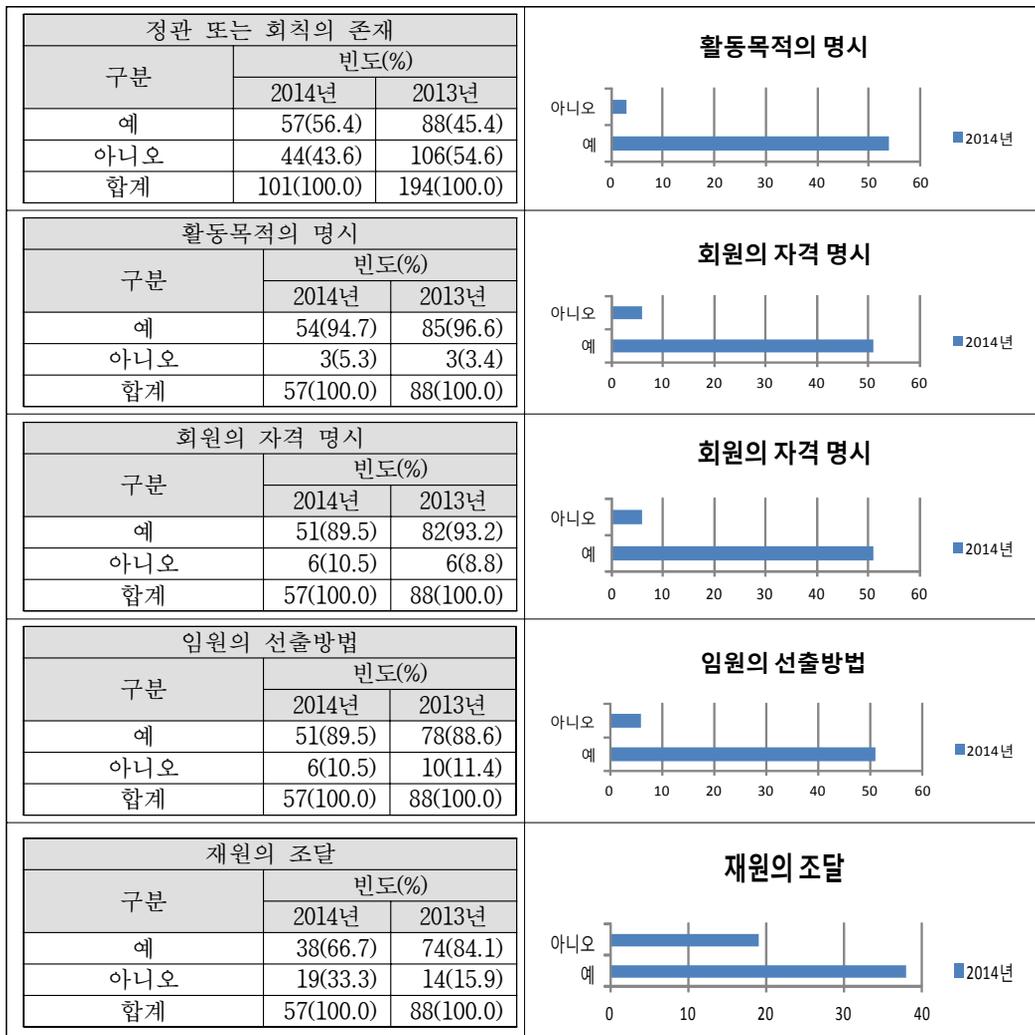
3) 정관 또는 회칙의 존재 유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1개 단체 중에서 57개(56.4%)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에서 45.4%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마을 단위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57개 단체 중에서 대부분의 단체가 활동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94.7%). 이들 57개 단체 중에서 51개(89.5%)는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해 놓고 있으며, 51개(89.5%)는 임원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들 57개 단체 중에서 38개(66.7%)는

단체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특이한 것은 활동목적의 명시, 임원의 선출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으나, 재원의 조달방법에 관하여 2013년에는 응답단체의 84.1%가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4년 조사에서는 응답단체의 66.7%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정관 또는 회칙의 존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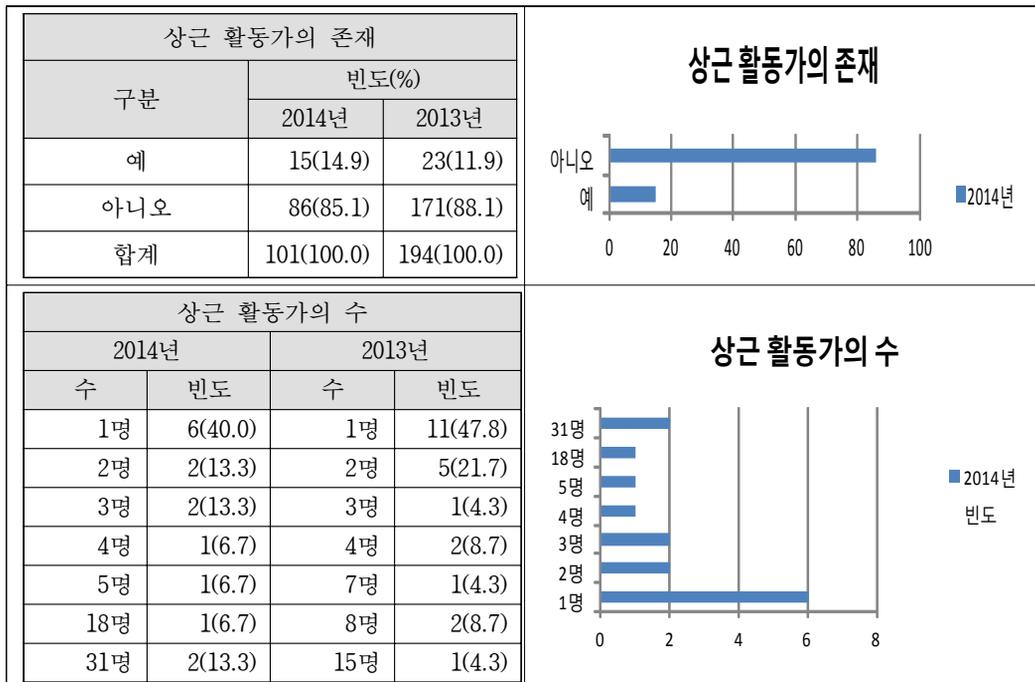


4) 상근 활동가의 존재 유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단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86개(85.1%)는 상근 활동가 없으며, 15개(14.9%)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활동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의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상근 활동가 있는 15개 단체의 상근 활동가의 수는 적개는 1명에서 많게는 31명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조직(40.0%)이 1명 정도의 상근활동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의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표 4-6〉 상근활동가의 유무 및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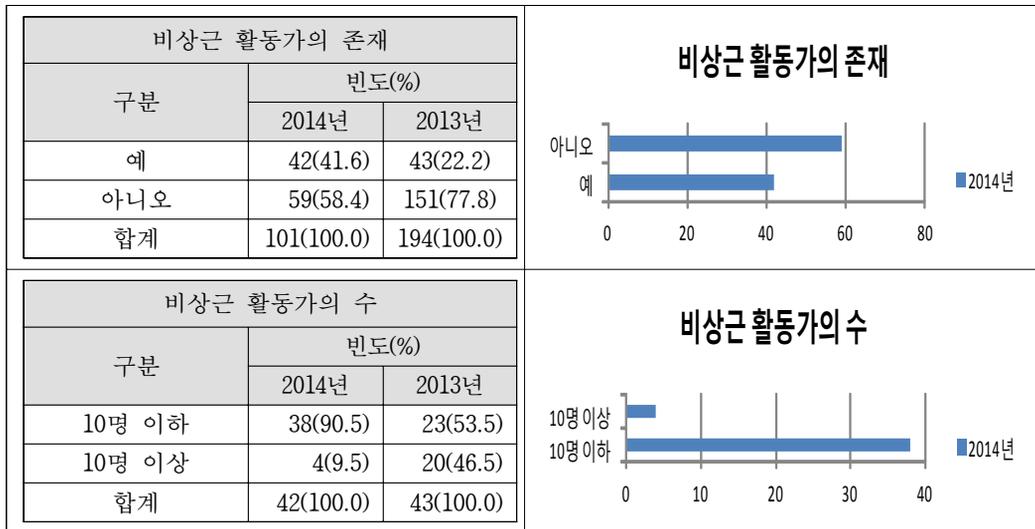


5) 비상근 활동가의 존재 유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하루 4시간 주 2~3일 정도” 동안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59개(58.4%)는 비상근 활동가 없으며, 42개(41.6%)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과 비교해 보면, 비상근 활동가가 없다는 단체가 2013년 77.8%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8.4%로 많이 낮아져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상근 활동가 있다는 42개 단체에서 비상근 활동가의 수가 10명 이하인 단체가 38개(90.5%)이고 4개(9.5%)는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비상근 활동가 있더라도 대부분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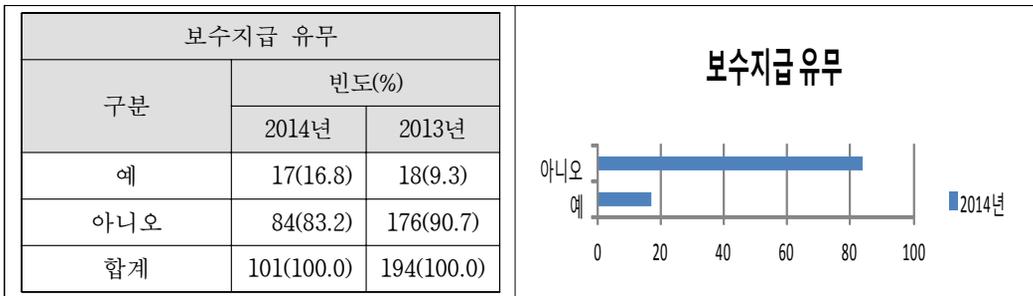
<표 4-7> 비상근 활동가의 유무 및 수



6) 활동가에 대한 보수지급 유무

상근 및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17개(16.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이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비중이 조사대상의 90.7%에 달했으나, 2014년에는 83.2%로 낮아진 특징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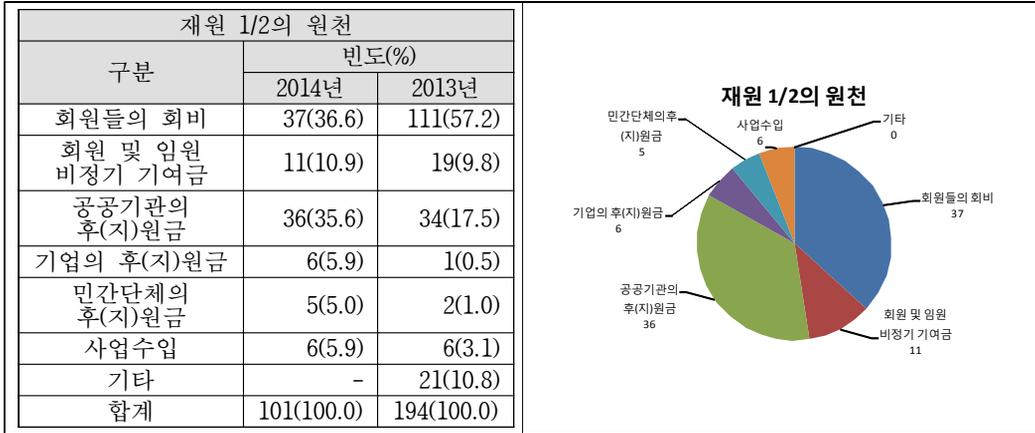
〈표 4-8〉 활동가에 대한 보수지급 유무



7) 단체 재원의 원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 재원의 1/2(50%) 정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전체 101개 단체 중에서 37개(36.6%)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36개(35.6%)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재원의 1/2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였고, 17.5%가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재원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줄어든 대신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 졌다.

<표 4-9> 재원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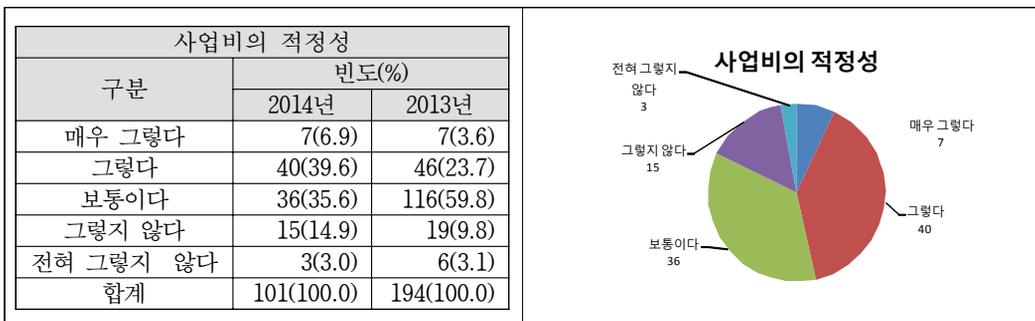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1) 사업비의 적정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책정한 사업비가 적정한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1%가 보통이상이라고 하여 유형별 사업비는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2013년 조사에 비해서 유형별 사업비에 대해 긍정화하는 의견이 다소 낮아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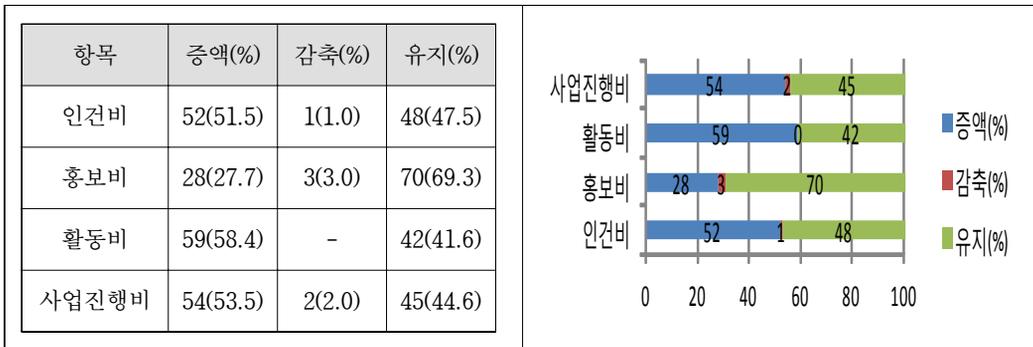
<표 4-10> 사업비의 적정성



2) 예산기준표의 개선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기준표상의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 있는가 질문한 결과, 인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고, 홍보비는 현행의 기준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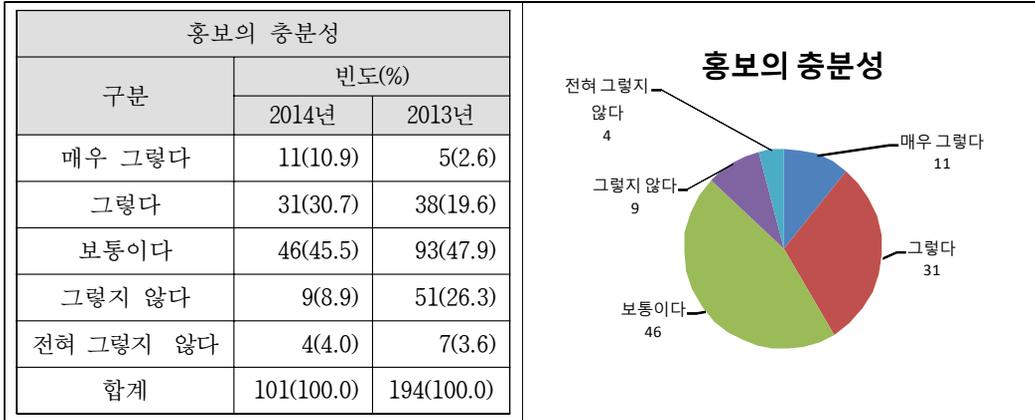
〈표 4-11〉 예산기준표 개선점



3) 홍보의 충분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1%가 보통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2013년 조사에서 보통이상 긍정적인 평가가 70%을 약간 상회한 것과 대조를 이루는 조사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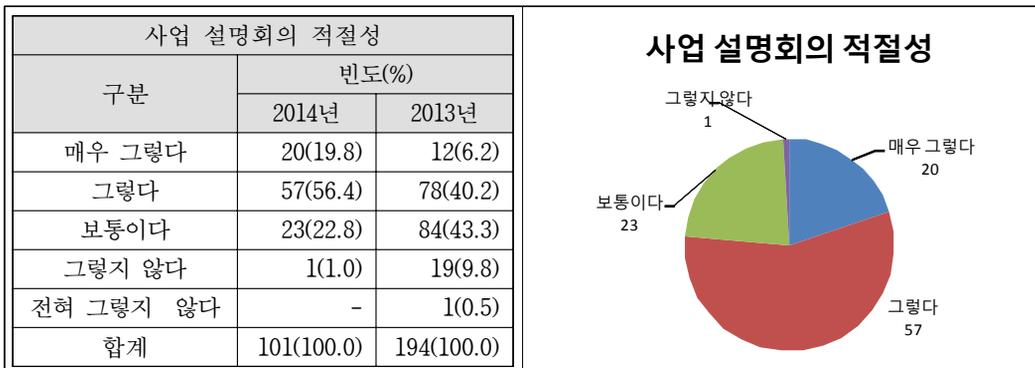
<표 4-12> 홍보의 충분성



4)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대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설명회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2%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13년 조사에서 사업설명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46.4%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진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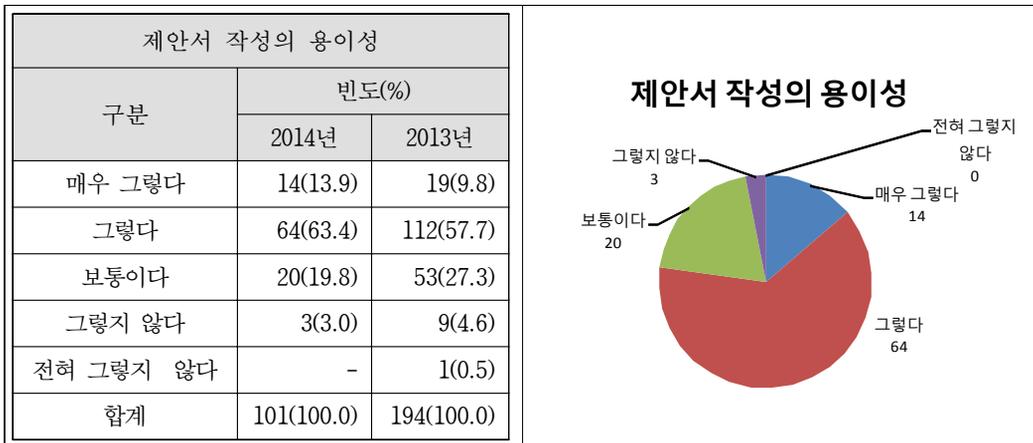
<표 4-13>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5)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제안서 작성이 용이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77.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응답은 3%에 불과 했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67.5%인 것과 많은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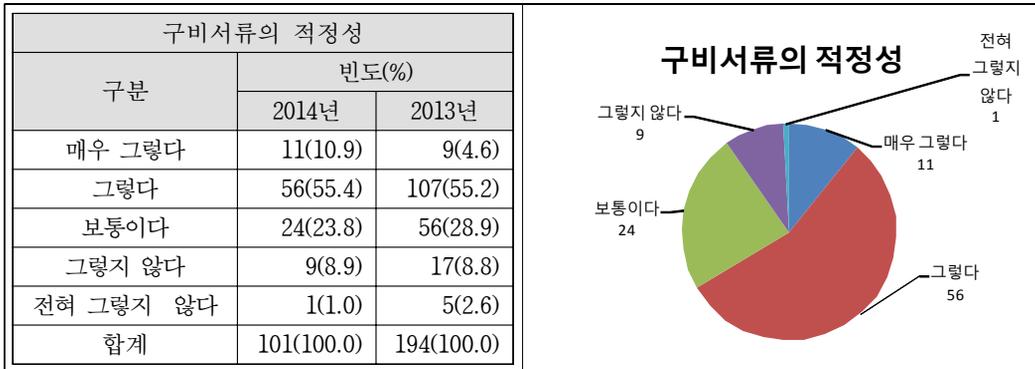
〈표 4-14〉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6) 구비서류의 적정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적정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6.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59.8%로 나타난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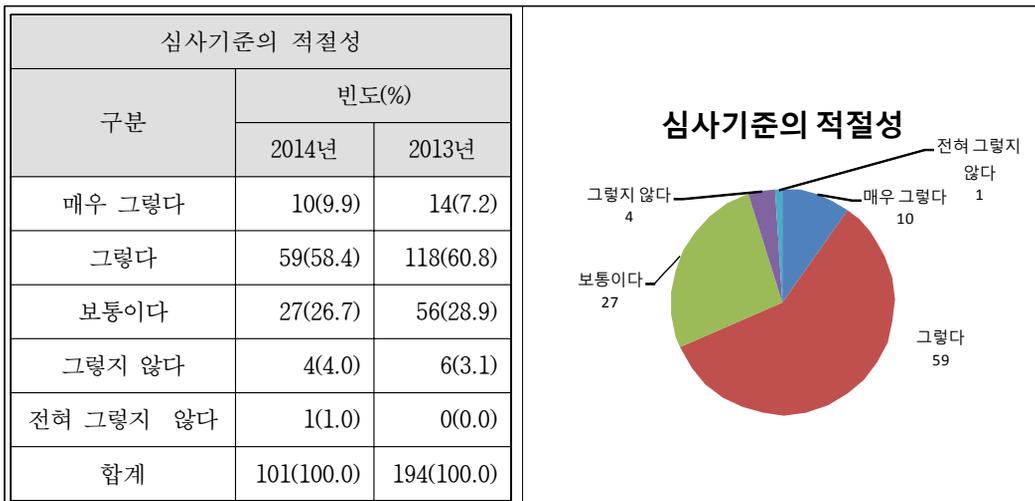
<표 4-15> 구비서류의 적정성



7) 심사기준의 적정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한 심사기준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3%가 “그렇다” 이상으로 평가고 있으나, 다른 질문항목에 비해서는 긍정의 비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의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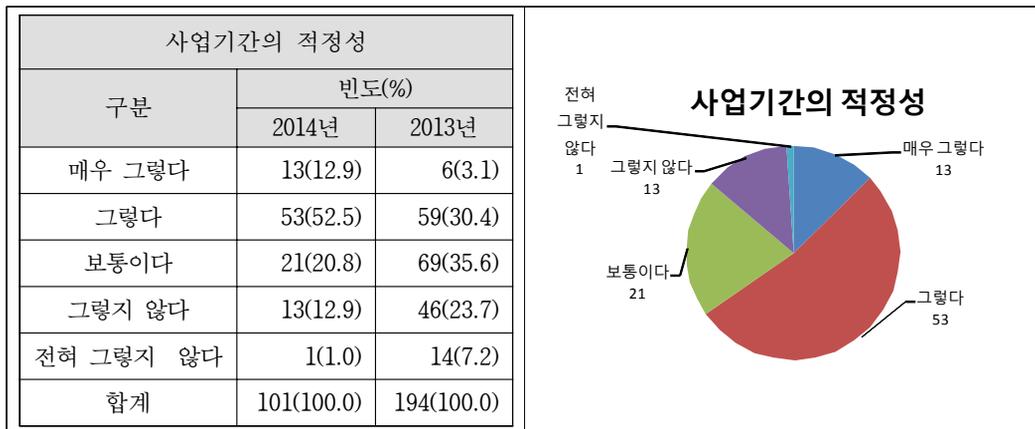
<표 4-16> 심사기준의 적절성



8) 사업기간의 적정성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이 적절한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4%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항목에 비하여 긍정의 정도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3년 조사에서 33.5%만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과는 아주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조사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의 부정적인 응답도 30.9%나 되어서 사업기간의 적절성을 다소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7〉 사업기간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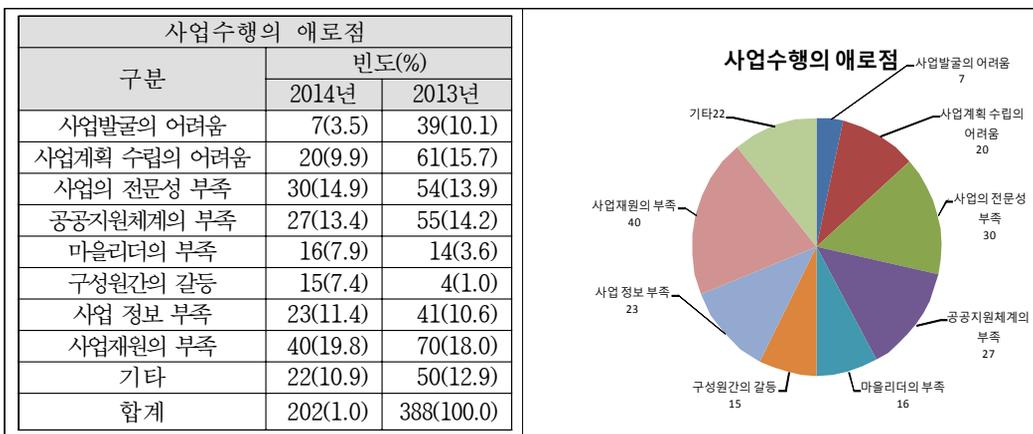
9) 사업수행의 애로점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9.8%가 “사업재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전문성 부족(14.9%)”, “공공지원체계의 부족(13.4%)”, “사업정보의 부족(11.4%)” 등의 순으로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단체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지기엔 장소 부분이 제한이

있음, 마을 주민의식 변화, 사업경비지출에 대한 부분, 사업규모, 사업대상자의 전문성 대비 정산서류의 작성의 까다로움, 사업에 대한 안내 부족, 사업의 이해, 사업 홍보의 어려움, 아파트 대표자회의 좋은 마을 만들기 이해부족으로 인한 갈등, 재정 사용에 너무나 많은 제약이 있어서 일을 하기가 불편함, 좋은마을만들기 사업 일괄홍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주민들의 이해부족, 직장인들 참여 어려움” 등을 지적하고 있다.

〈표 4-18〉 사업수행의 애로점



10) 사업의 성공 요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89.1%, ② “주민대상의 교육”에 대한 중요도는 86.2%, ③ “활동가의 양성”에 대한 중요도는 87.2%, ④ “법·제도의 마련”에 대한 중요도는 62.4%, ⑤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에 대한 중요도는 73.3%, ⑥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76.2%, ⑦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는 91.1%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의 성공요건으로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공기관 즉, 지방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시행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이 마을만들기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19〉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구 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무응답	합계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2014년	56 (55.4)	34 (33.7)	8 (7.9)	1 (1.0)	2 (2.0)	0 (0.0)	101 (100.0)
	2013년	102 (52.6)	78 (40.2)	9 (4.6)	2 (1.0)	0 (0.0)	3 (1.5)	194 (100.0)
주민대상의 교육	2014년	34 (33.7)	53 (52.5)	12 (11.9)	2 (2.0)	0 (0.0)	0 (0.0)	101 (100.0)
	2013년	65 (33.5)	101 (52.1)	20 (10.3)	3 (1.5)	0 (0.0)	5 (2.6)	194 (100.0)
활동가의 양성	2014년	53 (52.5)	35 (34.7)	11 (10.9)	2 (2.0)	0 (0.0)	0 (0.0)	101 (100.0)
	2013년	75 (38.7)	85 (43.8)	20 (10.3)	7 (3.6)	0 (0.0)	7 (3.6)	194 (100.0)
법/제도의 마련	2014년	21 (20.8)	42 (41.6)	31 (30.7)	6 (5.9)	1 (1.0)	0 (0.0)	101 (100.0)
	2013년	30 (15.5)	97 (50.0)	50 (25.8)	10 (5.2)	0 (0.0)	7 3.6	194 (100.0)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	2014년	25 (24.8)	49 (48.5)	22 (21.8)	4 (4.0)	1 (1.0)	0 (0.0)	101 (100.0)
	2013년	46 (23.7)	97 (50.0)	37 (19.1)	5 (2.6)	1 (0.5)	8 (4.1)	194 (100.0)
전문가의 지원	2014년	40 (39.6)	37 (36.6)	21 (20.8)	1 (1.0)	2 (2.0)	0 (0.0)	101 (100.0)
	2013년	67 (34.5)	89 (45.9)	24 (12.4)	5 (2.6)	0 (0.0)	9 (4.6)	194 (100.0)
구성원의 역량 강화	2014년	42 (41.6)	50 (49.5)	9 (8.9)	0 (0.0)	0 (0.0)	0 (0.0)	101 (100.0)
	2013년	86 (44.3)	82 (42.3)	18 (9.3)	3 (1.5)	0 (0.0)	5 (2.6)	194 (100.0)

그 밖에도 2014년 조사결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관심, 마을 공동체 이해, 선정된 팀에 대한 계획 공유, 아파트 구성원간의 이해, 지침 매뉴얼의 꾸준한 유지관리(업데이트) 간소화/획일화” 등등을 지적하고 있다.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지금까지 2014년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역량에 관한 질문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선 단체의 역량에 관한 조사결과로서는 첫째, 단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101개 중 68개(67.3%)가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에서도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이 가장 많았던 것은 같으나 비영리 민간단체 및 비영리 활동단체가 조금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다. 둘째, 단체의 활동분야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1개 단체 중 “교육활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각각 23개(22.8%) 씩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교육활동(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단체가 조금 더 늘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셋째,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57개(56.4%)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2013년의 54.6%에 비해 상당히 높아져서 마을 단위의 모임이 지속적으로 조직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단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86개(85.1%)는 상근 활동가 없으며, 15개(14.9%)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3년의 조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하루 4시간 주 2~3일 정도” 동안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임 활동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59개(58.4%)는 비상근 활동가 없으며, 42개(41.6%)의 단체만이 조직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3년에 비상근 활동가가 없

다는 단체가 77.8%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58.4%로 많이 낮아져 단체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상근 및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단체는 17개(16.8%)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나머지는 이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조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다는 비중이 조사대상의 90.7% 였으나, 2014년에는 83.2%로 낮아짐). 일곱째, “단체 재원의 1/2(50%) 정도” 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37개(36.6%)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응답이 36개(35.6%)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에는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이 57.2%였고, 17.5%가 공공기관의 후·지원금으로 충당함).

다음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첫째로 사업비의 책정(82.1%가 보통이상), 사업에 대한 홍보(87.1%가 보통이상, 2013년에는 70.9%), 사업 설명회(76.2%가 긍정적 평가, 2013년에는 46.4%가 긍정적 평가),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77.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67.5%가 긍정적 평가), 구비서류의 적절성(66.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59.8%이 긍정적 평가), 심사기준의 적정성(68.3%가 “그렇다” 이상으로 평가, 2013년의 조사결과도 비슷), 사업기간의 적정성(65.4%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 조사에서 33.4%만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9.8%가 “사업재원의 부족” 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전문성 부족(14.9%)” , “공공지원체계의 부족(13.4%)” , “사업정보의 부족(11.4%)” 등의 순으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조사에서는 사업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함). 셋째,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에 대한 중요도는 89.1%, ② “주민대상의 교육” 에 대한 중요도는 86.2%, ③ “활동가의 양성” 에

대한 중요도는 87.2%, ④ “법·제도의 마련”에 대한 중요도는 62.4%, ⑤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에 대한 중요도는 73.3%, ⑥ “전문가의 지원”에 대한 중요도는 76.2%, ⑦ “구성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중요도는 91.1% 등으로 나타나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2013년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이 중요도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제5장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

제1절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제2절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제3절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제5장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

제1절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1. 운영규정(규칙)의 제정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든 그 공동체의 활동기반이 되는 규정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공동체 활성화 주민조직이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주민조직 운영규정 또는 회칙을 마련하고 따라야 한다. 운영규정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조직의 성립, 활동비 지원신청, 활동비 지원심사 및 교부, 전담운영자 지정, 조직의 자금, 활동내용, 복수의 조직에 대한 사업조정, 활동비 사용, 결산 및 감사, 협의 체계 등을 포함한다. 또한 회원자격과 의무, 대표자 등 선출방법, 회의운영방법과 처리 등 자체적으로 정한 활동상의 지침으로서 회칙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자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구성원간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든 운영규정 및 회칙을 마련하여 조직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규정하여 조직이 가지고 있는 활동 목적을 조직의 내외부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01개 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조직은 56.4%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공동체의 운영규정 등의 제정은 구성원 스스로의 역량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신설조직이나 준비모임의 경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정관 또는 회칙을 만드는 일 또한 좋은 마을만들기의 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가칭 ‘마을만들기 표준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던 1991년도에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표준조례(안)를 만들어 보급한 사례와도 같다고 하겠다. 이러한 표준운영규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총칙 : 명칭/ 목적/ 사업/ 사무소의 소재지
2. 회원 : 회원의 구성/ 회원의 자격/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의 가입/
회비/ 회원의 징계/ 회원의 탈퇴 및 재가입
3. 임원 및 대의원 : 임원의 명칭과 정수/ 임원의 선임/ 임원의 임기/
임원의 권위·유고시/ 임원의 직무/ 대의원/
4. 총회 : 구성/ 소집 및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사항/ 의결권의 제한
5. 운영위원회(선택적) : 구성/ 소집/ 기능/ 개의 및 의결방법/ 의결권의 제한/
의사록/ 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
6. 조직 : 설치
7. 재산 및 회계 : 수입/ 재산의 종류/ 경비지출/ 회계/ 예산 및 결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재원의 공개/ 잉여금의 처분
8. 보칙

2. 체계적인 조직 구성

공동체의 조직체계는 앞서 지정한 운영규정 등이 제대로 제정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조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자치를 위한 조직화는 앞서 서술한 운영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종류·정수, 사무기구의 설치 및 기능, 감사기구의 설치 및 기능 등을 구성하는 일을 말한다.

마을자치는 자치의 한 유형이므로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을자치의 운영조직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조직과 집행조직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다. 의사결정조직은 입법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 단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법규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조직이다. 예컨대, 주민총회형의 의사결정조직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주민들 한사람 한사람이 의사결정권자가 된다. 대표들은 일정기간 주민들의 의사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되고, 이들은 주민에게 그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집행조직은 의사결정조직에서 결정한 것을 충실하게 집행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한국생활자치연구원, 2013: 53-54).

3. 가용재원의 확충

작게는 소규모 단체에서부터 크게는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비용이 수반되고 그 비용의 조달이 용이해야만 조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론의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 또한 작든 크든 조직(단체)인 이상 그 조직의 활동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비가 소요되게 마련이다. 조직의 규모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경비를 조달하는 방법은 자주적으로 마련하는 것과 조직 외부에 의존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이르러 자주재원이라고⁴⁾ 하고 후자는 의존재원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조직의 재원은 어느 하나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조직이든 가장 이상적인 재원조달 방법은 자주재원을 통해서 달성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자주재원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외수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마을 공동체의 운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공동체의 목적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체를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충당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으나,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수입(지방세수입+지방세외수입)과 의존수입(교부금+보조금)으로 충당하는 것과 같이, 마을 공동체에 있어서도 구성원 또는 회원의 회비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아 단체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대전형 마을만들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역시, 그 재원의 1/2을 회원의 회비로 충당하는 비율이 36.6%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단체는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구성원들의 회비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애로점으로 “사업재원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공공기관의 예산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4) 조직 또는 단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 재원의 자주적 사용과 자주적 조달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마을 공동체든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유료회원의 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단체의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즉 공공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문가의 발굴 및 양성에 단체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외에 기업 및 민간단체의 후원금 및 지원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설문조사 결과, 단체재원의 1/2 정도를 기업이나 민간단체에서의 후원금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는 비중은 전체의 5%대에 불과).

제2절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1. 지원체계의 문제점

마을공동체의 복원은 곧 주민자치의 전제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하여 10여년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시·도의 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적인 위상과 권한, 예산의 부족 혹은 주민참여의 부진과 자치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주민자치는 여전히 형해화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2년동안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문화취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를 관리하는 수준의 주민자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즉 지역의 공동체성을 형성하려는 노력에 치중하였다. 이는 주민자치를 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먼저 지역단위의 공동체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공동체가 존재해야 자치사업이나 자치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공동체가 공동체다움을 가지지 못할 때 주민자치는 형해화 되는 것이다. 지역계획, 지역복지, 지역교육, 지역진흥, 주민참여 등 주민자치의 중요한 5요소가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에는 역량의 부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대도시 혹은 거대도시에서는 주민들의 거주기간이 외국의 주요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히 짧아, 지속적 공동주거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즉 주민참여의 전제조

건으로서의 유인이나 인센티브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도시민들의 프라이버시 혹은 간섭받기 싫어하는 개인적 성향으로 인하여 고립된 섬이나 원자화된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선호하였다. 가족구성단위도 핵가족화 혹은 1~2인가족의 비율증대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나 여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김찬동, 2012: 125).

2.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들은 자치법규인 조례 및 규칙의 근거를 통해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 역시 자치법규의 규정을 통해서 만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공동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와는⁵⁾ 달리 대전광역시도 독립 조례 또는 조례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편이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 사례처럼 마을만들기에 관한 조례를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기존의 “사회적자본 확충조례(2013년 시행)”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현행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 조례”에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사업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제9조를 참조하여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것은 대전광역시가 전국 광역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사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⁶⁾

5) 예컨대,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즉, 동조례 제9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서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동조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한 사업은 “①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② 마을기업 육성, ③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 ④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⑤ 마을공동체 복지증진, ⑥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⑦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⑧ 마을학교 운영, ⑨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 ⑩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이다.

6) 전술한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와 제9조에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즉, 대전광역시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에서 “예산편성시 주민참여”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주민참여시민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만들기의 발단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널리 보급하고, 마을만들기의 전개상황에서는 재정이나 노하우의 도움을 주는 등 마을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김찬동, 2012: 125).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는 사업전반에 대해 책임 있게 관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성원 스스로 생산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사업경비를 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2014년에 지원된 사업비 총액은 431,429천원이었고, 모이자에 103건 204,154천원, 가꾸자에 40건 195,275천원, 해보자에 4건 32,000천원이 지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에 선정된 101개 단체의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홍보비를 제외하고 인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등의 예산편성기준에 대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증액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즉, 인건비는 증액 51.5%, 감축 1.0%, 현행유지 47.5%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비는 증액 58.4%, 감축 0.0%, 현행유지 41.6%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진행비는 증액 53.5%, 감축 2.0%, 현행유지 44.6%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홍보비는 증액 27.7%, 감축 3.0%, 현행유지 69.3% 등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아울러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의 규모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전광역시의 2014년 마을만들기 사업예산의 대부분이 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퍼실리테이션 등을 위한 운영경비의 규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4.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의 육성 및 지원

퍼실리테이터는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하는데 있어 촉진자로서 과제분석 또는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성공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과제와 직무를 정확히

추출하고, 참가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실행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퍼실리테이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질문기술, 피드백기술, 요약기술 등이 요구되며, 각 구성원들이 가진 능력, 자원을 최대한 잘 끌어내어 정리하는 조력자로서 위의 기술을 반드시 겸비해야 한다.

퍼실리테이터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룹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팀워크를 이끌어 내며 그룹이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진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로서는 그룹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제명확화의 역할, 프로세스를 디자인하는 프로세스 디자이너 역할, 구성원이 생각과 느낌 등을 표출하도록 질문하는 질문자의 역할, 구성원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합의형성자 역할, 조직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갈등관리자 역할, 조직에 활력을 고취하는 팀활성화 역할 등이 있다.

퍼실리테이션이 응용되는 분야로는 첫째, 체험학습형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참가자들이 같은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학습을 촉진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혁신형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자기의 성장과 감성의 촉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가자 상호간의 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참가자가 내적 잠재 능력을 자각하게 한다. 셋째, 자기 표현형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연극이나 미술 등 예술활동 분야에서 구성원 간 혹은 연기와 관객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넷째, 문제해결형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일반 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워크숍을 통해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합의 형성형 퍼실리테이션으로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생각을 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인내심을 갖고 합의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연수형 퍼실리테이션으로 사회교육, 기업교육, 가정교육, 학교교육 등 교육활동을 위해 폭넓게 활용된다.

퍼실리테이션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나 조직이 개별적으로 퍼실리테이터를 접촉하여 조력을 받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요원을 육성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촉진자 또는 조력자의 도움이 요구된다.

5.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지침 또는 매뉴얼의 보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의 설문조사에서 대표들의 73.6%가 마을만들기의 매뉴얼이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하는 역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각 단계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을 제시해 보면 <표 5-1>과 같다.

단계별로 보면 첫째, 마을만들기 파트너십구축 단계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사를 규명하고 상호이익의 틀을 설정하게 된다. 각 마을 주체들은 각자의 행동목표와 과제가 있어서 이들을 상호연계하여 마을만들기의 파트너십 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을에 대한 분석단계로서 마을 분석을 실시할 경우에는 주관적인 데이터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도 중요하다. 또 사실에 대한 것과 의견에 대한 것 간에는 균형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실질적인 과제 도출에 유용성이 있다. 자료의 분석에는 마을 내 자원과 강점, 도전과 이슈에도 균형이 잡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마을비전의 설정단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희망적, 적극적, 동기유발적, 자발적 의사를 묶어내어 작업을 추진한다. 비전의 창출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목적의식을 최대한 고취시킨다. 비전은 미래 마을의 이상향에 대한 강력한 이미지를 진술한 것으로 한두문장 간략하게 기술하며 비전을 구체화한 설명문을 만들면 이상적인 비전문이 이루어진다. 넷째, 과제의 선정단계는 앞의 단계를 통하여 도출하고 핵심적인 것을 모아 우선순위로 배열하여 체계화한다. 마을의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의 시계열적 과제로 배분한다. 다섯째, 실행전략, 즉 계획수립의 단계이다. 전략계획은 비전과 과제의 내용을 달성하는 전략적 계획이어야 하고 측정가능한 성과중심적 내용이어야 한다. 여섯째, 구체적 실행단계는 구체적 실행을 위한 조직을 만들고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 중심이 된다. 일곱째, 결과평가와 환류단계는 마을만들기의 결과가 얼마나 성과목표에 도달하였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평가하는 단계이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150-171).

〈표 5-1〉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단계	세부내용
1. 파트너십구축	1) 마을만들기 촉진집단의 형성 2) 마을만들기 주인의식 및 공감대의 형성 3) 마을리더 아카데미 운영으로 마을리더 양성 4) 마을 주요 주체들의 관심사 지도그리기 5) 조직의 결성 6) 확대된 파트너십의 형성
2. 마을 분석	1) 마을의 환경 분석 2) 자원 및 자산의 분석 3) 마을의 욕구 및 문제의 분석
3. 마을 비전 설정	1) 마을비전 창출을 위한 논의 2) 마을비전 창출 주민모임 운영
4. 과제의 선정	1) 과제의 열거 및 우선순위 선정 2) 타겟집단의 확인과 장기적 성과 목표의 정의 3) 실행 방법의 검토 4) 정부 및 민간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5. 실행전략 수립	1) 성과중심의 실행전략 2) 파트너십 기구의 역할과 전략과의 연관성 확보 3) 성과중심의 예산계획 수립 4) 마을계획 수립 5) 마을조례 제정
6. 구체적 실행	1) 실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2) 자원의 배분 및 재형성 3) 주민 및 네트워크와의 교류를 통한 추진 4) 교육 및 연수 5) 소식지 및 사업촉진 커뮤니케이션 활동 6) 지역브랜드화 마케팅
7. 결과평가와 환류	1) 성과목표에 대한 사정 2)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한 피드백

자료 : 부산발전연구원(2010: 149)

제3절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⁷⁾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은 기존의 평생학습과는 다른 개념으로 추진해야 한다. 기존의 평생학습 교육은 요가나 스포츠댄스, 다양한 인문학 강좌 등 주민들의 취미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육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교육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인 주민교육은 주민이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서울연구원, 2013: 133).

1. 교육기획 및 기법

마을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교육이란 마을주민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안내하는 일련의 활동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마을주민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교육의 기법을 살펴보면, 첫째로 효율적이고 대규모 교육이 장점인 강의식 교육이다. 강의식 교육은 강사가 중심이 되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교육방식이다. 즉, 강사가 주민들에게 내용을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거나 주입시키는 교육방법이다. 교육의 경제성, 일관된 초점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교육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강의식 교육은 강사의 전문성 여부에 따라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념위주로 학습내용을 설명해 나갈 수 있으며, 사례를 들어 강의를 진행해 나가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강사의 준비정도에 따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강사와 주민 모두에게 익숙한 강의 형태이다. 특히 강사 섭외가 교육준비의 전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손쉽게 준비할 수 있는 교육방식이기도 하다. 강의식 교육은 단시간 내에 많은 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때 적합하다. 주민 상호간의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교육의 분위기에 따라서 대규모 홍보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강의식 교육은 강사의 수가 적고 주민 수가 많아서 단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많은 주민들에게 전달할 때

7)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하는 수단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이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서울연구원(2013) 자료를 인용했음을 밝힙니다.

유용하다. 교육 준비가 용이하며 많은 수의 주민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기에 비용과 시간이 절약된다.

둘째,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토론식 교육이다. 토론식 교육은 주민들이 서로의 의견을 발표함으로써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의 집단사고로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강의식 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하는 교육법으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결론을 이끌어 내는 교육방법이다. 토론식 교육방법은 다른 어떤 교육방법보다 상호작용적이며 주민 중심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사전달 기술과 비판적 사고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다. 강의식교육에 비해 많은 시간이 요구되며, 주민들이 토론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교육내용과는 상관없는 주제로 토론하거나, 토론이 일부 주민에게만 국한 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사회자의 사전준비가 매우 중요하다. 토론식 교육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분석이 가능하다. 토론식 교육은 참여자들 간의 의사소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교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의 습득보다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창의력과 협동심을 기르는데 유용한 교육법이다. 토론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토의집단의 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토론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은 원형으로 앉도록 배치하는 것이 좋으며, 토론 주제나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의 구성이나 배치가 달라질 수 있다.

셋째, 강의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의 결합(패널토론)을 들 수 있다. 패널토론은 구성원이 많아 모든 사람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지 못하여 전체적인 토론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유용한 교육 방식이다. 전문지식을 갖춘 발표자가 제한된 시간 동안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이 질문하고 발표자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패널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문제나 논쟁점을 확인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표자도 서로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주장하는 바가 비슷한 패널일 경우에는 비슷한 부분이 아닌 차이를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럴 경우 주민들에게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다양한 견해를 제공하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쟁점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입장 차이별로 전문가를 발표자로 제외하고, 상호토론을 통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다.

넷째, 대안을 모색하는 교육방식(브레인스토밍)을 들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특정한 주제나 문제점에 대하여 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제시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이다. 이것은 주민의 창조력을 촉진시키고 교육 참여도를 높여주는 교육방법이며, 사전에 어떤 것을 계획하고자 할 때 활용된다. 브레인스토밍의 중요한 목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교육태도를 갖게 하는 데 있다. 브레인스토밍은 개개인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내어놓고, 그 자극 작용에 의하여 보다 나은 아이디어나 결론을 끌어내는 방식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진행자가 있어야 하며, 진행자는 강사이거나 일반 주민이 맡을 수도 있다. 또한 주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기록할 사람도 선정한다. 이를 통해 기록은 모든 주민들이 볼 수 있고, 나중에 있을 평가과정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실무능력의 배양(실습교육)을 들 수 있다. 실습교육은 이론적으로 교육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해봄으로써 기능을 숙달하는 활동이다. 현장탐방도 이론을 습득하기 보다는 강사와 함께 직접 현장탐방을 하면서 그 방식을 배우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을에서 진행되는 많은 내용은 이론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실습교육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섯째, 발전단계·활동주체에 맞는 교육이다. 마을의 발전단계와 주체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한다. 마을의 활동주체별 역량에 맞춘 교육콘텐츠와 운영형태가 지원되어야, 주도적인 참여와 실질적인 마을살이를 위한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다. 마을에 대한 이해와 활동발굴이 미흡한 초기마을에서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통한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마을에서 교육수요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초기 단계에서는 외부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기초정보에 대한 과건교육과 마을활동가 발굴 및 양성교육에 중점을 둔다.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과 은퇴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특화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여성의 경우에는 함께 하는 육아, 교육 등을 은퇴시니어의 경우에는 재능기부를 통한 마을활동 등 관심주체에 대한 사례를 통해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콘텐츠를 기획한다. 청년의 경우에는 창업, 주거 문제 등 현실적 주제나, 지역사회에서 실천가능한 문화예술활동, 실험적 삶의 방식 등을 주제로 기획할 수 있다. 초보적 단계를 벗어난 중기의 경우에는 마을별, 활동주체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분야를 설정하고 심화교육을 진행하여 다양한 활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한다. 발전기의 경우에는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지역별 마을학교에서 담당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마을학교 통합 콘텐츠, 매뉴얼개발 등을 주도하고 마을활동가 보수교육 등을 연계, 추진한다.

2. 주민교육체계

1) 주민이 가르치고 주민이 배우는 체계

주민교육의 경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교육 제공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주민이 마을활동가로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런 한계는 주민교육의 전달체계에서 발생한다. 기존의 교육은 자치단체나 지원센터 혹은 시민단체가, 교육을 기획한 후 강좌를 개설해서 이 강좌를 신청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주민참여형으로 진행하더라도 교육 기획이 완료되고 시간과 장소, 교육방법이 결정된 후 주민에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기존의 방식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이 배제되면서 마을의 일반주민이 함께 참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마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함께 할 주민모임 차원에서 단체로 교육을 받으며 요구를 모아야 의미가 있다.

마을의 주민모임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모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주민모임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한다. 주민모임에서 주민교육이 진행된다면 5~1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 주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교육의 시간과 장소, 교육의 내용을 정하여 지원센터에 교육신청을 하도록 한다. 지원센터는 강사를 파견하여 주민과 함께 교육을 기획한 후 교육을 제공하게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규모로 진행되면서 교육수요가 늘어나며 강사의 부족이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을 주민 스스로가 마을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주민교육을 위한 강사의 양성

주민이 원하는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내용을 교육할 수 있는 강사진이 광범위하게 육성되어야 한다. 마을주민을 강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교육할 수 있도록 강사를 교육시켜야 한다.

마을에 필요한 교육 내용은 크게 마을살이 교육, 전문분야 교육, 실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마을살이 교육은 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교육으로 마을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동의 요구를 모아내는 방법, 관계 맺기, 마을 파악하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둘째, 전문분야 교육은 구체적인 마을활동과 관련된 교육으로 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마을기업, 공동육아 등에 대한 교육이다. 셋째, 전문분야 교육이 특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 이해에 대한 교육이라면 실무교육은 특정분야의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때 필요한 실무 능력을 키우는 교육인데, 여기서는 회계교육, 서류작성법 등이 해당된다.

〈표 5-2〉 교육 콘텐츠 분류에 따른 교육내용 사례

마을살이 교육	전문분야 교육	실무교육
·마을의 필요성	·공동육아	·회계와 결산
·마을의 이해	·마을방송국	·서류작성법
·마을만들기 사례	·마을미디어	·기획안 작성법
·동네한바퀴	·마을기업	·행정정보
·마을지도 그리기	·협동조합	
·퍼실리테이터 교육	·아카이브	
·리더십 교육	·마을축제	
·갈등관리	·주민참여예산제	

자료: 서울연구원(2013: 144)

마을교육의 콘텐츠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마을주민이 직접 개발해야 한다. 각 마을활동가들이 모여 스스로의 마을에 필요한 교육을 모아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육성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원센터에서는 각 마을에 존재하는 마을 활동가를 강사로 모집한 후 전문가 강의와 집단 토의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제4절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강화

1. 중간지원기관의 의의

1) 중간지원기관의 개념 및 발달 배경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송두범, 2011: 32). 중간지원기관은 공공조직, 영리조직, 그리고 비영리조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개념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의 명칭은 역할에 따라 “Intermediaries”, “Third Parties”, “Brokers”, “Consoltant as Bridge Builder”, “Bricoleurs”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간지원기관은 “공공부문,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반시민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창업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필요한 지원활동을 연계해 주는 조직으로 생산관리, 인사, 재무, 교육훈련, 회계, 법률, 홍보, 마케팅,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가 지원되는 조직이다”로 정의되고 있다(양용희, 2013: 71-71).

중간지원기관은 정부, 비영리조직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출발하였다. 정부, 지자체 그리고 재단이 직접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인적·물적 자원과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중간지원기관은 이러한

역할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다. 전세계에서 중간지원조직이 가장 잘 발달한 미국에서 중간지원기관은 몇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었다. 첫째는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비영리부문 서비스에 대한 정부정책의 위임이다.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주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비영리부문의 정책과 서비스가 위임되면서 지역 중심의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중앙에서의 지역으로의 위임은 사업의 유연성과 지역 욕구의 반영, 그리고 책임성을 촉발하였다. 두 번째는 기업을 중심으로 학교, 비영리조직 등 모든 조직에서 일어난 경제력의 분권화 현상이다. 기업의 19세기의 수직적, 중앙집중식의 조직구조는 20세기에 있어서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복잡하고 글로벌 환경속에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분권화, 조인트벤처, 네트워크 등의 유연한 전략들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공공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파트너들 간의 의사소통과 연대에 따른 상호작용과 네트워크가 중요해지면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요구되었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정부 또는 지자체와의 연결을 위한 과정에서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이 제기되었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자본,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었다(양용희, 2013: 73).

2) 중간지원기관의 유형

일본의 중간지원기관은 공설공영(公設公營), 공설민영(公設民營), 민설민영(民設民營)의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공설공영은 행정기관의 시설로서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고 100% 세금으로 운영된다. 공설민영은 시설은 행정기관이 담당하고 위탁비나 조성비 등으로 민간단체나 NPO가 운영을 담당한다. 민설민영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중간지원기관의 활동형태를 기준으로 지역밀착형, 기능분야(전문분야) 특화형, 중간지원 조직지원형 등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송두범, 2011: 32, 재인용).

미국에서는 전국 NPO센터 네트워크(NCN)의 분류에 따르면, NPO센터의 주요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종합센터, 서비스센터, 테마센터, 지역사회개발센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종합NPO센터(Multi-sector Center)는 NPO센터의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많은 NPO들이 공동으로 입주해 사무실공간을 공유하며 비용절감과 공유 서비스 등의 혜택을 같이 누리는 유형이다. 특히 입주한 NPO들은 서로다른 서비스 대상자(클라이언트)들을 갖고 있지만, 공유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센터시설을 이용해 직원들을 공유하는 등의 다목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둘째, 서비스센터(Service Center)는 지역사회의 비영리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스톱 공간에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에 입주한 NPO들은 클라이언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한다.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직접 방문, 상담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위치해 있는 특징이 있다. 셋째, 테마센터(Theme Center)는 특정 분야에 집중한 서비스 활동을 하는 NPO센터이다. 따라서 이곳에 입주한 NPO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유형의 활동을 하는 NPO들로 서로 공조활동의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40개의 테마센터들 중에서 37.5%가 예술테마센터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밖에도 사회정의, 지속가능성, 교육,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테마센터들이 있다. 넷째, 비영리 인큐베이터(Nonprofit Incubators)는 주로 새로운 신생 NPO들의 초기사업정착을 지원하는 유형의 NPO센터로, 매우 드물게 찾아볼 수 있다. 신생 NPO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입주 기간도 짧고, 상담 등의 전문 서비스 지원기간도 비교적 짧은 편이다(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15-16).

우리나라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2011년 1월에 개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0조)하여 운영 중에 있다. 지역별 지원기관의 유형은 민간단체, 연구소(7개소),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사회적기업지원센터, 연구소(5개소)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일부는 자치단체 출연기관, 일부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 위탁의 중간지원기관의 본래 역할보다는 컨설팅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안행정부의 마을기업 역시 기존 사회적기업지원기관, 중소기업지원센터, 지자체출연 연구원, 민간 컨설팅 회사 등 컨설팅 수행을 위한 조직들을 중간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다. 농림수산물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송두범, 2011: 33).

3)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은 각 나라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은 주로 재단과 지역사회 그리고 자본조달과 같은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특히 배분기능 중심의 재단들은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중간지원기관들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양용희, 2013: 74). 또한 미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각종 지원과 기술을 알선, 조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해 조직운영, 재정, 인력확보, 홍보 등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기능을 담당한다. 셋째, 사회적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다른 조직과 네트워크하고 각종 제도와 법률의 적용을 수용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넷째,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사회기반의 정비, 조사, 연구, 여론형성, 제도화, 입법화를 위한 로비활동 등 전략적인 장기적 역할을 담당한다(송두범, 2011: 33).

영국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정책과 지원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매개하기 위한 전국 및 지역단위의 중간지원기관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투자, 융자, 그랜트 등 재정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본조달을 위한 중간지원기관들이 발달되어 있다. 지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주요 수혜대상자에 대한 지원, 표준화된 질적 서비스와 책임성, 자원의 연계 그리고 효과적인 정책의 추진 등의 기능을 수행 한다(양용희, 2013: 74).

일본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커뮤니티비지니스를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예비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 사업전개, 자금조달, 인재육성, 상담창구, 정보발신, 교류촉진, 코디네이트,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커뮤니티비지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만으로는 사업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경우 중간지원 활동외에 공공시설 위탁운영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 NPO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은 정보의 수·발신, 자원과 기술의 중개, 인배육성, 상담 및 컨설팅, 네트워크 및 교류촉진, 평가, 정책제안, 조사·연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송두범, 2011: 34).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배분기능의 재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기업이나 자선단체,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융자, 투자조직이 거의 부재하기 때문에 이들 업무를 중개할 중간지원기관의 기능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기업사회공헌과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의해 이들 업무를 대신 수행할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양용희, 2013: 74).

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 제고

1) 설치배경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지난 3월에 시행된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제13조(사회적자본지원센터) 및 제14조(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②민·관 협력 증진, ③사회적자본 확충사업의 지원, ④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공익활동의 자료수집 및 홍보, ⑤마을만들기 관련 사업 및 공익 활동가의 발굴·육성, ⑥시민공동체 조직 간의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⑦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 및 협력, ⑧그 밖에 사회적자본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센터는 사회적자본이 무형의 관계자본이라는 점에서 ‘상호 신뢰의 네트워크를 마을과 일터에서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을포털, 마을교육, 마을미디어, 마을일꾼, 커뮤니티 맵핑, 마을네트워크 활성화 등 6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편, 협력적 소비를 통해 배려와 협력을 체험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마을공동체 박람회, 불만을 노래하면서 대안을 탐색하는 대안합창제 등의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역할제고 방안

한국의 중간지원기관들은 정부, 지자체, 기업 등 지원조직과 지원 대상 집단사이의 순기능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아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의 중간지원기관은 정체성의 부재, 낮은 사회적 인지도, 취약한 재정구조, 전문인력의 부족, 지원조직과의 수직적 관계, 중간지원기관들간의 네트워크 협력부족 등의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중간지원기관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이나 전문 비영리기관들이 발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을 대행하는 위치에 머물러 있다. 이는 대부분의 중간지원기관들이 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의존함으로써 자생력을 지니지 못하는 상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간지원기관들의 중간 조정기관으로써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양용희, 2013: 78, 재인용).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역시 한국의 중간지원조직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동 센터는 설립 초창기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충실한 기능과 역할을 요구하기에는 다소 무리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는 내부적으로 운영체계의 확립을 위한 노력이 우선 선행되어야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대전광역시에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성상 마을공동체 육성에 관한 전문인력과 활동가, 그리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를 보유하거나 확보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동 센터에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많은 부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육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 정책제언

제6장 결론 : 정책제언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 육성과 관련된 이론 및 사례 연구, 그리고 실태분석을 통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의 모색해 보고, 이와 아울러 대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실태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문을 통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마을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문헌에서 소개된 국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대전시에서 2014년에 실시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서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4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2013년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2014년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단체의 역량에 관한 질문과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우선 단체의 역량에 관련한 조사결과로서, ① 단체의 형태는 67.3%가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 단체의 활동분야에는 “교육활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각각 22.8% 씩으로 가장 많았다. ③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는 56.4%의 단체가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④ 응답 단체의 85.1% “하루 8시간 주 4일” 동안 단체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활동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⑤ 응답단체의 58.4%가 “하루 4시간 주 2~3일 정도” 동안 단체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임 활동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응답 단체의 90.7%가 상근 및 비상근 활동가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⑦ 응단체체의 36.6%가 “단체 재원의 1/2(50%) 정도” 를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응답단체의 35.6%는 “공공기관 후(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첫째로 사업비의 책정(82.1%가 보통이상), 사업에 대한 홍보(87.1%가 보통이상, 2013년에는 70.9%), 사업 설명회(76.2%가 긍정적 평가, 2013년에는 46.4%가 긍정적 평가),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77.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67.5%가 긍정적 평가), 구비서류의 적절성(66.3%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에는 59.8%이 긍정적 평가), 심사기준의 적정성(68.5%가 “그렇다” 이상으로 평가, 2013년의 조사결과도 비슷), 사업기간의 적정성(65.4%가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2013년 조사에서 33.4%만이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에 선정된 147개 단체 중 설문에 참여한 101명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9.8%가 “사업재원의 부족” 을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업의 전문성 부족(14.9%)”, “공공지원체계의 부족(13.4%)”, “사업정보의 부족(11.4%)” 등의 순으로 애로점을 지적하고 있다(2013년 조사에서는 사업재원의 부족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함). 셋째,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①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에 대한 중요도는 89.1%, ② “주민대상의 교육” 에 대한 중요도는 86.2%, ③ “활동가의 양성” 에 대한 중요도는 87.2%, ④ “법·제도의 마련” 에 대한 중요도는 62.4%, ⑤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 에 대한 중요도는 73.3%, ⑥ “전문가의 지원” 에 대한 중요도는 76.2%, ⑦ “구성원의 역량 강화” 에 대한 중요도는 91.1% 등으로 나타나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역량 강화” 가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공동체의 활동기반이 되는 운영규정(규칙)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하고, 임원의 종류·정수, 사무기구의 설치 및 기능, 감사기구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조직화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단체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역할로서는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을 위해 기존 “사회적자본 확충조례(2013년 시행)”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운영 예산의 규모를 상향조정 하는 등을 포함한 재원지원의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하는데 있어 촉진자로서 과제분석 또는 워크숍을 이끌어가는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교육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인 주민교육은 주민이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하는데, 강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패널토론, 브레인스토밍, 실습교육 등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마을의 주민모임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모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강사의 양성에 있어서도 마을살이 교육, 전문분야 교육, 실무교육 등의 교육요원의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넷째, 중간지원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지원조직은 기획력과 전문성, 마케팅능력 등을 갖춘 에이전시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 및 연구 등을 통해 활동기반 및 전문지식을 구축하고 공동의 ‘핵심목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력과 정보제공, 인재육성 등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대전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마을사업 운영자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및 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현근.(2012). 동네자치를 위한 동네거버넌스 형성의 방향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24.
- 곽현근.(2013). 주민 자율성 존중하는 촉진자·협력자되라, 「주민자치」, Vol. 20, 한국자치학회, 22-25.
- 김찬동.(2012). 「마을공동체 복원을 통한 주민자치 실현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대전광역시.(2013).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계획」, 대전광역시 내부자료.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2014). 「2014 대전형 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설명회」.
- 부산발전연구원.(2010). 「부산의 마을만들기 모형분석과 좋은 마을만들기 매뉴얼 작성」.
- 서울특별시.(201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송두범.(2011). 충남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과제, 「열린충남」, 통권56호: 31-39.
- 양용희.(2013). 한국의 지역재단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NGO연구」, 제8권, 제1호: 65-82.
- 장준호·김선직 율김.(2008). 「마을 만들기 실천」, 서울: 형설출판사.
- 전대욱.(2013). 이윤추구보다 자긍심과 연대, 재미와 열광, 「주민자치」, Vol. 21, 22-27.
- 정규호.(2012). 한국 도시공동체운동의 전개과정과 협력형 모델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Vol. 35, No. 2, 7-34.
- 최길수.(2013a). 사회적자본과 민관협치 구현 방안, 「제3회 대전NGO축제 학술마당 자료집」, 1-29.
- 최길수.(2013b).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의 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기본연구과제.
- 한국생활자치연구원.(2013). 「생활자치 합시다」, 대영문화사.
-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12). 「시민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사회 지원방안 연구」.

부 록 : 설문지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 연구를 위한 설문서

안녕하십니까?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기본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마을만들기”에 참여 경험이 있으신 여러분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하여 대전광역시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를 내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뿐, 개인별 세부 응답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 본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수(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
 (☎042-530-3517, 팩스: 042-530-3528, E-Mail: kschoi@djdi.re.kr)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해당하는 곳에 ‘○’ 해 주세요

I. 단체역량에 관한 사항

1. 귀하의 단체는 어떤 형태입니까?
 ①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 ②비영리 민간단체
 ③비영리 활동단체 ④기타(_____)

2. 귀하 단체의 **활동분야**는 무엇입니까?
 ①지역운동 단체 ②교육활동(평생교육 및 사회교육) 단체 ③문화·체육활동 단체
 ④환경운동 단체 ⑤여성운동 단체 ⑥자원봉사 단체 ⑦기타 (_____)

3. 귀하의 단체는 정관 또는 회칙(규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예(☞ 3-1번부터 3-4번까지 추가로 응답) ②아니오

- 3-1. 정관 또는 회칙(규칙)에 단체의 **활동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

3-2. 정관 또는 회칙(규칙)에 **회원의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3-3. 정관 또는 회칙(규칙)에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3-4. 정관 또는 회칙(규칙)에 **재원의 조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4. 귀하의 단체는 하루 8시간 주 4일 단체업무를 전담하는 **상근** 활동가가 있습니까?

- ①예(☑ **4-1번에도 응답**) ②아니오

4-1. 상근 활동가가 있다면 몇 명이 있습니까? (____)명

5. 귀하의 단체는 하루 4시간 주 2~3일 정도 단체업무를 지원하는 **비상근** 활동가가 있습니까?

- ①예(☑ **5-1번에도 응답**) ②아니오

5-1. 비상근 활동가가 있다면 몇 명이 있습니까? (____)명

6. 귀하의 단체에서는 활동가(상근·비상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①예 ②아니오

7. 귀하의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원의 1/2(50%)** 정도를 어떻게 충당하고 있으십니까?

- ①회원들의 회비 ②회원 및 임원 비정기 기여금 ③공공기관의 후(지)원금
④기업의 후(지)원금 ⑤민간단체의 후(지)원금 ⑥사업수입 ⑦기타 (_____)

II.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사항

1. 유형별 사업비의 책정에 대하여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기준표 항목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해 주세요)

항목	증액	감축	유지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업진행비			
기타()			

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는 잘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제안서는 용이하게 작성하셨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6.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한 구비서류의 종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7.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8.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기간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전혀 그렇지 않다

9.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 선택)

- ①사업발굴의 어려움 ②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 ③사업에 대한 전문성 부족
 ④공공지원체계의 부족 ⑤마을리더의 부재 ⑥단체 구성원간의 갈등
 ⑦사업에 대한 정보의 부족 ⑧사업재원의 부족 ⑨기타(_____)

10.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어떤 요소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치 않음	전혀 중요치 않음
공공기관의 예산지원	()	()	()	()	()
주민대상의 교육	()	()	()	()	()
활동가의 양성	()	()	()	()	()
법/제도의 마련	()	()	()	()	()
지침 및 매뉴얼의 보급	()	()	()	()	()
전문가의 지원	()	()	()	()	()
구성원의 역량 강화	()	()	()	()	()
기타(_____)	()	()	()	()	()

III. 응답자 특성에 관한 질문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	만 (_____)세
3. 학력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전문대포함) ④ 대학원 졸 ⑤ 기타_____		
4. 거주지	① 동 구 ② 중 구 ③ 서 구 ④ 유 성 구 ⑤ 대 덕 구		
5. 월평균 가구소득	① 200만원 이하 ② 201~300만원 ③ 301~400만원 ④ 401~500만원 ⑤ 501~600만원 ⑥ 601만원 이상 ⑦ 모름		
6. 주거형태	① 주상복합 ② 단독주택 ③ 아파트 ④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⑤ 기타_____		
7. 대전시 거주기간	① 3년 이하 ② 4년 ~ 6년 ③ 7년 ~ 10년 ④ 11년 ~ 13년 ⑤ 14년 ~ 16년 ⑥ 17년 ~ 20년 ⑦ 20년 이상		
8. 주택소유형태	① 자택 ② 전세 ③ 월세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본연구보고서 2014-20

지방정부의 마을공동체 육성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인 유재일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1-763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전화 / 530-3517, 팩스 / 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 제일문화사 TEL 042-672-5193 FAX 042-672-5194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